

政策研究資料

94-02

兒童權利的增進을 위한
法的·制度的·行政的 措置

鄭基源

吳美暎

韓國保健社會研究院

兒童權利的增進을 위한
法的·制度的·行政的 措置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9.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 42-14

전화 : 355-8003~7

FAX : 352-9129, 352-2181

政策研究資料 94-02

兒童權利的 增進을 위한
法的·制度的·行政的 措置

1994. 9.

韓國保健社會研究院

兒童權利宣言

兒童權利宣言

1989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國際聯盟은 1924년 總會에서 “兒童의 權利에 관한 제네바 宣言”을, 이어 國際聯合은 1959년 總會에서 제네바 宣言을 기초로 한 10개 항목의 “兒童權利 宣言”을 채택하였다. 國際聯合은 다시 1989년의 總會에서 “兒童의 權利에 관한 協約”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일에 이 協約에 署名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批准書를 國際聯合에 寄託함으로써 1991년 12월 20일부터 “兒童權利에 관한 協約”의 當事國이 되었다.

協約 제44조의 規定에 따라 協約에서 인정하는 兒童權利의 實行을 위한 當事國의 措置에 관한 國家報告書를 國際聯合 事務總長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는 1993년 12월 當院에 ‘兒童權利의 增進을 위한 法的·制度的·行政的 措置에 관한 國家報告書’의 國文 및 英文(案)을 作成할 것을 의뢰하였다. 이 政策研究資料는 當院이 保健社會部에 제출한 國家報告書(最終案)를 바탕으로 作成한 것으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누리는 兒童權利의 現況을 紹介하고 있다.

研究陣은 報告書의 作成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해 주신 保健社會部, 外務部, 法務部, 文化體育部, 教育部, 그리고 勞動部의 關係官들에게 感謝하고 있다. 그리고 民間團體의 意見을 收斂해 준 유니세프 韓國委員會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한다.

끝으로 이 政策研究資料에 收錄된 內容은 研究陣의 意見이며, 當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4년 8월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 河 清

- 序 論 1
- 第1章 協約 履行을 위한 一般 措置 6
 - 第1節 協約의 規程과 國內法 및 政策의 調和 方案 7
 - 第2節 兒童關聯 政策의 調整 및 協約履行 事項의 모니터링을 위한 機關 9
- 第2章 兒童의 定義 12
- 第3章 一般原則 15
 - 第1節 無差別 原則(協約 第2條) 15
 - 第2節 兒童利益 最優先의 原則(協約 第3條) 16
 - 第3節 兒童의 生命, 生存 및 發達權(協約 第6條) 16
 - 第4節 兒童에 대한 意思尊重의 原則(協約 第12條) 16
- 第4章 市民의 權利와 自由 18
 - 第1節 이름과 國籍(協約 第7條) 18
 - 第2節 身分의 維持(協約 第8條) 19
 - 第3節 表現의 自由(協約 第13條) 20
 - 第4節 思想, 良心 및 宗教의 自由(協約 第14條) 21
 - 第5節 結社 및 集會의 自由(協約 第15條) 22
 - 第6節 私生活의 保護(協約 第16條) 22
 - 第7節 情報接近權(協約 第17條) 23
 - 第8節 拷問 및 其他 非人道的 取扱을 받지 않을 權利 (協約 第37條 第1項) 24

第5章 家庭環境 및 代理保護	25
第1節 父母의 指導와 責任(協約 第5條, 第18條 第2項)	25
第2節 父母로부터의 分離(協約 第9條)	26
第3節 家族의 再結合(協約 第10條)	27
第4節 兒童을 위한 養育費 回收(協約 第27條 第4項)	27
第5節 家庭環境 喪失 兒童(協約 第20條)	27
第6節 入養(協約 第21條)	29
第7節 不法海外移送 및 未歸還(協約 第11條)	31
第8節 兒童 虐待, 遺棄 및 身體的, 心理的 回復과 社會復歸 (協約 第19條 및 第39條)	31
第9節 養育 및 保護機關에 대한 審査(協約 第25條)	33
第6章 基礎保健 및 福祉	35
第1節 生存 및 發達(協約 第6條 第2項)	35
第2節 障礙兒童(協約 第23條)	37
第3節 保健서비스(協約 第24條)	39
第4節 社會保障 및 兒童保護施設(協約 第26條 및 第18條 第3項)	40
第5節 生活水準(協約 第27條 第1項, 2項, 3項)	42
第7章 教育, 餘暇 및 文化的 活動	44
第1節 教育(協約 第28條)	44
가. 學校의 種類	45
나. 教育豫算	50
第2節 教育의 目標(協約 第29條)	52
第3節 餘暇, 娛樂活動 및 文化的 活動(協約 第31條)	53
第8章 特別保護措置	54
第1節 法的 紛爭上의 兒童(協約 第40條, 第37條, 第39條)	54
가. 少年刑事行政(協約 第40條)	54

나. 自由剝奪된 兒童(協約 第37條 第2項, 3項, 4項)	58
다. 兒童에 대한 死刑 및 終身刑 禁止(協約 第37條 第1項)	61
라. 社會復歸支援(協約 第39條)	61
第2節 搾取 狀況下의 兒童	62
가. 經濟的 搾取(協約 第32條)	62
나. 癲藥(協約 第33條)	63
다. 性的 搾取와 虐待(協約 第34條)	64
라. 其他 形態의 搾取(協約 第36條)	64
參 考 文 獻	65
附 錄: 兒童의 權利에 관한 協約	71

表 目 次

<表 1> 兒童人口	5
<表 2> 年度別 要保護兒童 發生現況	28
<表 3> 年度別 國內外 入養 實績 推移	29
<表 4> 國外入養 現況과 分布, 1993	30
<表 5> 兒童福祉施設 現況, 1993	33
<表 6> 年度別 嬰·育兒 保護施設數 및 兒童數	33
<表 7> 嬰·幼兒 豫防接種率, 1989	36
<表 8> 全國 在家障礙兒童의 年齡別·性別·障礙種類別 障礙出顯率	38
<表 9> 施設別 保育現況	41
<表 10> 少年/少女家長世帶의 現況	43
<表 11> 學校 및 學生의 現況, 1993	45
<表 12> 特殊教育現況, 1993	48
<表 13> 私立學校現況, 1993	49
<表 14> 教育豫算의 規模	51
<表 15> 總 犯罪對比 青少年犯罪 構成比	61

그림 目 次

<그림 1> 兒童福祉 政策의 基本方向	8
----------------------------	---

序 論

1. 대한민국은 兒童의 權利에 관한 이해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兒童을 物質的 및 情緒的으로 保護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理解와 努力의 목적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人間으로서의 尊嚴性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尊重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大韓民國 어린이憲章 前文) 하는데 있으며, 그들이 자라나 '祖國發展의 일꾼이 되어, 世界와 宇宙로 힘차게 나아가 人類의 自由와 幸福을 이룩'(靑少年憲章 前文)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 兒童의 權利에 관한 國際協約의 精神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兒童의 權利에 대한 인식과 서로 일치하는데, 이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法的, 制度的 및 行政的 措置의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前文과 11개 條項의 本문으로 이루어진 '大韓民國 어린이憲章'에서는 아동이 누려야 할 基本的 人權에 대한 尊重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內容은 다음과 같다.

大韓民國 兒 兒 憲 章

大韓民國 어린이憲章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人間으로서의 尊嚴性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尊重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健全하게 태어나 따뜻한 家庭에서 사랑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營養을 취하고, 疾病의 豫防과 治療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環境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教育施設에서 개인의 能力과 素質에 따라 教育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創造하고 널리 퍼 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娛樂을 위한 施設과 空間을 제공 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禮節과 秩序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責任을 다하는 民主市民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自然과 藝術을 사랑하고 科學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社會環境과 危險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虐待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勞動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障礙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教育과 治療를 받아야 하고, 빛나간 어린이는 善導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所望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韓國人으로, 人類의 平和에 이바지할 수 있는 世界人으로 자라야 한다.

4. 前文과 5개 條項의 本文으로 이루어진 '靑少年憲章'은 人類의 自由와 幸福을 이룩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內容은 다음과 같다.

靑少年憲章

靑少年은 새 시대의 주역이다.

뜨거운 정열을 가슴에 품고 自然과 學問을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祖國發展의 일꾼이 되어, 世界와 宇宙로 힘차게 나아가 人類의 自由와 幸福을 이룩한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을 밝힌다.

1. 靑少年은 出生, 性別, 學歷, 職業, 그리고 身體的 條件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모든 靑少年은 適性과 能力을 갖고 닦아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는 슬기와 勇氣를 갖춘다.

1. 家庭은 靑少年이 情緒를 갖추고 愛情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아버지는 올바른 삶의 본을 보이며, 자녀는 어른을 恭敬하는 몸가짐과 밝은 성품을 익힌다.

1. 學校는 靑少年이 조화로운 배움을 통하여 教養과 知識과 體力을 기르는 곳이다. 資質을 존중하고, 自我實現을 통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을 가르치며, 文化意識과 民主市民精神을 높인다.

1. 社會는 靑少年이 즐겁게 일하며 보람있게 奉仕하는 곳이다. 成長과 發達을 도와주며, 더불어 사는 기쁨과 餘暇善用의 마당을 제공하고, 건전한 環境을 만든다.

1. 國家는 靑少年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한 政策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배움터와 일터를 고루 갖추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靑少年 개개인을 각별히 保護하여 適應하고 自立하도록 이끈다.

5. 지난 30년간의 經濟社會發展과 함께 이루어진 醫療·保健部門의 成長은 產前診察率(95%)과 施設分娩率(99%)의 增加와 嬰兒死亡率의 급속한 하락(人口

千名當 12.8명)을 가져왔다. 또한 全國民 醫療保險制度는 아동이 健全하게 태어나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醫療保障의 기틀을 만들어 주고 있다.

6.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國家發展의 原動力이었으며, 전통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價値 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은 9년간의 교육을 義務教育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1993년 4월 현재 中學校 進學率 99.9%, 高等學校 進學率 99.1%). 정부는 이러한 교육의 量的 擴大뿐만 아니라 質的 向上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7. 兒童福祉에 관한 基本法律인 현행의 '兒童福祉法'은 1961년 12월 30일 '兒童福利法'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制定되었다. 兒童福利法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發生한 많은 貧困兒童, 戰爭孤兒, 浮浪兒, 非行兒 등 社會的 保護를 요하는 아동들을 위하여 制定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經濟成長은 社會全般에 걸쳐 物質的인 福祉環境의 向上을 가져왔으나, 産業化 過程을 거치면서 發生한 離婚, 別居, 遺棄, 虐待와 같은 家族解體 現象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要保護兒童들이 發生하게 되었고, 기혼여성들이 社會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一般兒童들의 養育問題가 크게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1년에 '兒童福利法'을 '兒童福祉法'으로 전면 개정하여, 要保護兒童 중심의 정책과 병행하여 一般兒童들의 健全育成과 福祉의 積極的인 추진을 기본 정신으로 담게 되었다.

8. 대한민국에 있어서 兒童의 權利가 절대적으로 保障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의 權利伸張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民間團體들도 兒童의 權利 保護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兒童權利에 관한 協約의 條項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保障될 수 있는 法的, 制度的, 行政的 조치를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9. 1990년 0-17세의 兒童人口는 13,752,575명으로 全體人口의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統計廳, 1992: 32), 男子 兒童이 女子 兒童보다 많아 107.3의 성비를 나타낸다. 兒童人口는 점차로 減少하여 2000년에는 1,200만명(全體人口의 26%), 2010년에는 1,100만명(全體人口의 23%), 2020년에는 1,000만명(全體人口의 20%)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表 1> 兒童人口

(單位: 천명)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인구(A)	37,407	40,420	43,390	44,851	46,789
아동인구(B) (B/A, %)	15,219 (40.7)	14,844 (36.7)	13,752 (31.7)	12,801 (28.5)	12,037 (25.7)
영아기(0세)	755	611	632	673	669
유아기(1-5세)	3,840	3,929	3,313	3,304	3,363
국민학생시기(6-11세)	5,486	4,763	4,877	3,956	3,947
중·고생시기(12-17세)	5,138	5,541	4,930	4,868	4,058

資料: 統計廳, 『將來人口推計: 1990-2021』, 1991.

第1章 協約 履行을 위한 一般 措置

10. 대한민국은 1990년 9월 2일에 발효된 “兒童權利에 관한 協約”에 1990년 9월 25일에 署名을 하였고, 協約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현행의 관련법들과 저촉되고 있는 일부 條項들에 대하여 유보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1991년 11월 20일에 批准書를 寄託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20일부터 “兒童權利에 관한 協約”의 당사국이 되었다.

11. 대한민국이 유보하고 있는 協約의 條項은 제9조 3항, 제21조 가항, 그리고 제40조 2항 나호 (5) 등이다. 協約의 제9조 3항은 부모와의 面接交渉權을 保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民法 제837조의 2는 부모의 面接交渉權만을 保障하고 있을 뿐 아동의 面接交渉權은 保障하지 않고 있다. 入養에 관한 協約에서는 관계 당국의 허가에 의한 入養만을 인정하고 있으나(제21조 가항), 대한민국의 民法 제871조는 부모가 入養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家庭法院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民法 제878조와 제881조에서는 戶籍法에 따른 신고만으로 入養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協約의 제40조 2항 나호 (5)에서 保障하고 있는 上訴權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는 憲法 제110조 4항 및 軍事法院法 제534조에 의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단심제가 인정되고 있다.

12. 대한민국이 유보하고 있는 協約의 條項들이 대한민국 兒童의 人權 實現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協約에서 요구하고 있는 兒童의 權利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協約에서 유보하고 있는 條項들에 대하여 法的, 制度的, 行政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3. 協約은 그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兒童權利의 내용들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 兒童權利 協約의 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1993년에 발족된 國際聯合兒童基金(UNICEF) 韓國委員會는 兒童權利에 관한 協約의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1994년 활동에서의 중점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財政과 民間을 통하여 조성된 基金이 쓰여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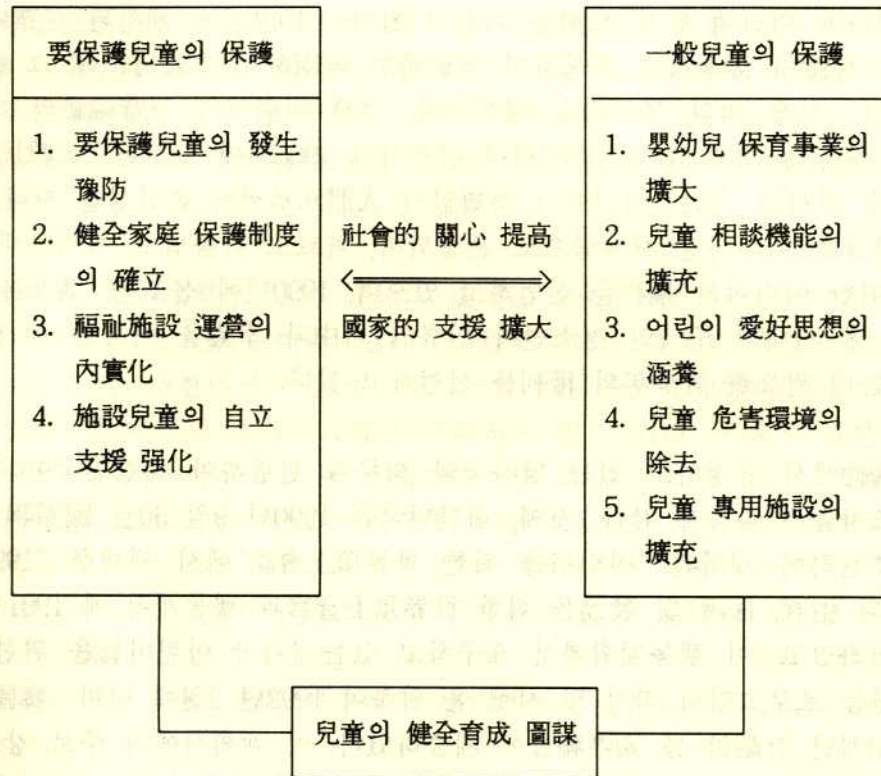
第1節 協約의 規程과 國內法 및 政策의 調和 方案

14. 대한민국은 兒童權利에 관한 協約을 批准하기 전부터 이미 兒童의 權利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81년에 개정된 兒童福祉法에서는 ‘兒童이 健全하게 출생하여 幸福하고 健康하게 育成되도록 그 福祉를 保障’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여, 전체 어린이가 兒童福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957년에 선포하고 1988년에 개정된 ‘大韓民國 어린이憲章’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人間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나’기 위한 어린이의 權利를 선언하고 있으며, 1990년에 선포한 ‘靑少年憲章’에서는 새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인류의 自由와 幸福을 이룩할 수 있도록 成長하는데 필요한 靑少年의 權利를 선언하고 있다.

15. 協約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시행한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은 1990년 9월 30일 國際聯合兒童基金 주관하에 개최된 ‘어린이를 위한 世界頂上會談’에서 채택한 ‘1990년대 어린이의 生存, 保護 및 發達을 위한 世界頂上宣言과 행동계획’에 1991년 6월에 서명하였고, 이 행동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국 어린이들을 위한 1990년대 행동 프로그램의 작성 및 시행’을 위하여 1992년 2월에 이미 ‘韓國 兒童福祉 10개년 計劃書’를 國際聯合에 제출하였다. 이 계획서에서 주로 강조되고 있는 兒童福祉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 保健의 향상, ② 맑은 물 공급, ③ 食品衛生과 國民營養, ④ 兒童教育의 증진, ⑤ 母子保健의 향상 및 家族計劃, ⑥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기타 프로그램- 1)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無料 保育事業, 2) 勤勞 어린이 및 청소년의 保護, 3) 어린이 專用施設 확충, 4) 障礙어린이의 福祉增進, 5) 불우어린이 지원

16. 대한민국은 아동을 위한 1990년대 행동 프로그램을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될 제7차 經濟社會發展 5개년 계획의 兒童福祉部門에 포함시키고 있다. 協約에서 제시하고 있는 兒童의 權利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은 제7차 經濟社會發展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兒童福祉 政策의 기본 방향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아동의 健全育成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면서 社會的 관심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림 1> 兒童福祉 政策의 基本方向



資料: 保健社會部, 「제7차 經濟社會發展 5개년 계획 1992-1996: 保健醫療·社會保障部門計劃」, 1992.

17.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協約에서 제시하고 있는 兒童의 權利가 대한 민국에서 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兒童의 權利 實現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민간 단체들은 兒童權利의 實現을 위해 질적인 차원 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가 오 늘날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對應政策도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第2節 兒童關聯 政策의 調整 및 協約履行 事項의 모니터링을 위한 機關

18. 兒童 및 靑少年을 위한 國家政策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수립되고 시행 된다. 그러나 保健社會部가 아동 관련 정책의 주무부서로 兒童福祉와 관련된 는 정책을 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은 文化體育部에 서 총괄하고 있다.

19. 保健社會部의 家庭福祉審議室 산하에 兒童福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兒童福祉課를 비롯하여 家庭福祉課 및 婦女福祉課 등을 두고 있으며, 이 들 課에서 兒童福祉에 관한 國家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兒童福祉課는 兒童福祉와 관련된 국가의 사업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기구로서, 그 주요 업무는 ① 要保護兒童이 發生하는 것을 豫防하기 위한 相談事業, ② 少年/少女家長世帶의 保護, ③ 國內入養事業, ④ 家庭委託事業, ⑤ 兒童福祉 施設의 運營 支援 및 監督, ⑥ 不遇兒童을 위한 結緣事業, ⑦ 兒童福祉施設에서 성장하여 퇴소하는 年長兒童에 대한 自立支援서비스 ⑧ 嬰·幼兒 保育事業의 擴充 등이다. 保健社會部에 설치된 中央兒童福祉委員會와 각 시·도에 설치된 地方兒童福祉委員會는 兒童福祉政策 및 制度에 관한 사항, 兒童福祉施設의 발전에 관한 사항, 不遇兒童의 健全한 育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兒童福祉 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및 심의하고 있다.

20. 文化體育部에는 靑少年政策室을 두어서 국가의 靑少年 育成 政策을 총괄 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靑少年基本法의 제정, 韓國靑少年基本計劃 및 靑 少年 育成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靑少年政策室에는 靑少 年企劃課, 靑少年指導課, 靑少年交流課, 靑少年施設課, 靑少年修鍊課 등을 두고 있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靑少年育成委員會를 두어 국가의 靑少年 育成에 관 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산하단체로 韓國靑少年開發院, 靑少年 對話의 廣場, 韓國靑少年團體 協議會 등을 두어 政策開發, 研究 및 支援 등을 실시하고 있다. 文化體育部 靑少年政策室은 각 부처별 靑少年 育成 관련업무 를 企劃, 調整, 總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靑少年 프로그램 開發 및 普及, 靑少年 修鍊施設 擴充, 靑少年團體 育成, 靑少年指導者 養成, 靑 少年 環境改善, 어려운 靑少年 支援, 靑少年 國際交流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1. 教育部는 교육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兒童 및 靑少年 福祉와 관련한 중요한 기능을 관장하고 있다.
22. 法務部에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靑소년의 健全한 心身發達을 沮害하는 環境要因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靑少年 犯罪者에 대해서는 少年院 및 少年鑑別所를 두어 保護處分에 의하여 송치된 少年과 법원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假委託된 少年의 收容保護, 矯正教育 및 감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여 保護少年을 교정 및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3. 兒童權利와 관련된 家庭法院의 역할은 주로 가정의 문제를 조정하는데 있으나, 調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심판을 내리게 된다. 특히 調整의 방향은 兒童福祉의 理念과 부합되도록 하고 있다.
24. 勞動部 勤勞基準局의 산하에 있는 婦女少年課, 賃金福祉課, 勤勞基準課, 婦女指導課 등에서 兒童權利의 증진을 위한 職業訓練, 就業斡旋, 각종 문화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5. 아동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出捐機關에서는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89년에 개원한 『韓國靑少年研究院』은 靑소년의 保護, 育成, 선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 靑소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靑少年 指導者의 연수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韓國教育開發院』은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는 새로운 韓國的 教育 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의 目的, 內容, 方法 등에 관한 綜合的이고 科學的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教育 體制를 발전시키기 위한 教育放送도 실시하고 있다.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은 국민의 保健, 社會福祉, 그리고 人口 등과 관련된 政策 研究를 통하여 합리적인 保社政策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특히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의 家族政策研究室에서는 兒童福祉政策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 외에 入養 및 保育事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教育 訓練 및 여성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社會參與 및 福祉增進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韓國女性開發院』에서도 아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就業女性의 子女養育 支援方案과 政策對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26. 대한민국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여러 民間團體 및 機關들이 兒童의 權利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兒童의 教育과 관련된 단체로는 全國敎員團體總聯合會, 韓國學院總聯合會, 참교육을 위한 全國學父母會, 人間教育實現 學父母聯隊, 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 등이 있다. 兒童福祉와 관련된 민간조직으로는 韓國兒童團體協議會, 韓國兒童福祉施設協會, 韓國嬰幼兒保育施設協會, 韓國婦女福祉聯合會 등이 있다.

第2章 兒童의 定義

27. 대한민국에서의 아동은 兒童福祉法에서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¹⁾ 그러나 아동과 관련된 여러 법들에서는 아동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 대한민국에서는 “만 20세로 成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民法 제4조), 20세 미만의 未成年者는 국민투표권, 대통령선거권, 그리고 국회의원선거권을 갖지 못한다(國民投票法 제7조, 大統領選舉法 제8조, 國會議員選舉法 제8조). 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할 때에는 法定代理人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民法 제5조). 親權을 행사하는 父 또는 母는 未成年者인 자녀의 法定代理人이 되고(民法 제911조), 未成年者에 대하여 親權者가 없거나 親權者가 法律行爲의 代理權 및 財産管理權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後見人을 두게 되는데(民法 제928조), 未成年者의 재산에 대하여는 法定代理人 또는 後見人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9. 憲法에 의하여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保護를 받게 되는데(제32조 5항), 구체적인 保護의 내용은 勤勞基準法에서 규정하고 있다. 勤勞基準法에서는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8세 미만자에 대해 就業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며, 義務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13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就業를 禁止하고 있다. 단, 13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義務教育에 지장이 없는 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발행한 就職認許證을 가지고 있는 자는 就業가 가능하다.

30. 대한민국의 아동에 대한 義務教育은 6년의 國民學校 教育과 3년의 中學校 教育으로 規定되고 있다(教育法 제8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義務教育을 無償으로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한 施設確保에 필요한 조치 및 國民學校와 中學校의 설치 및 경영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8조 제3항, 제4항

1)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아동과 유사한 연령층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로는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보호법), 연소자(노동법), 소년(소년법), 청소년(청소년복지법) 등이 있다. 이 중 미성년자와 소년은 “20세 미만인 자”이며, 아동과 연소자는 “18세 미만인 자”이고, 청소년은 “9-24세인 자”를 말한다.

및 제86조 제1항).

31. 대한민국의 刑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少年法 제2조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少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反社會性이 있는 少年에 대하여 그 環境의 調整과 性行의 矯正에 관한 保護處分을 행하고, 또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하고자 하는 少年法上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民法과 기타 選舉權 年齡을 規定한 法令 등을 고려하여 規定한 것이다.

32. 結婚할 수 있는 연령과 관련하여, 民法 제807조는 “男子 만 18세, 女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結婚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同法 제808조에서는 未成年者가 結婚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後見人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民法 제826조의 2에서는 “未成年者가 結婚을 한 때에는 成年者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未成年者라도 結婚한 경우에는 親權 또는 後見을 벗어나서 獨立的인 法的 行爲能力을 갖게 된다.

33. 대한민국의 兵役法은 대한민국 국민의 兵役義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兵役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徵兵檢査를 받고 現役兵으로 入營할 수 있다(제11조). 그러나 17세 이상의 자로서 軍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육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제19조).

34.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나이는 특별히 規定되어 있지 않다. 아동이 身體的, 精神的으로 법정의 모든 절차를 견딜만큼 강하다면 그 아동은 증언할 수 있다. 단, 아동의 증언을 채택하는지의 여부는 법정의 권한이다. 그러나 16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제159조 1호에서 宣誓 無能力者로 규정하고 있다.

35. 未成年者保護法은 未成年者의 흡연,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禁止하고, 아울러 未成年者의 保護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未成年者의 건강을 保護하며 그들을 善導·育成하기 위하여 制定되었다. 20세 미만의

未成年者는 흡연을 하는 행위, 음주를 하는 행위,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興行場, 遊興接客業所, 射倂行爲場, 遊技場 등에 출입하는 행위, 기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할 수가 없다(未成年者保護法 제2조).²⁾

36. 대한민국에서 運轉免許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이며, 16세 이상의 사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러나 18세 이상자는 유흥접객영업소에 고용될 수 있어 20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 조항과 상충된다. 또한 20세 미만자의 흡연과 음주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세 미만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 1학년생들은 음주나 흡연을 하는데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第3章 一般原則

第1節 無差別 原則(協約 第2條)

37. 協約의 제2조에서는 無差別 原則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憲法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 宗教 또는 社會的 신분에 의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規定함으로써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을 禁止하고 있다. 憲法 제11조 2항은 “社會的 特殊階級の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조 3항은 “勳章 등의 榮轉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同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身分制度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親族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여 아동을 保護하고 있다.

38. 婚姻外의 출생자는 一夫一妻制 및 法律婚을 존중하는 社會的 관습때문에 냉대를 받아 왔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개인을 人間으로서 존중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身分的, 財産的으로 婚姻 중의 출생자와 평등하게 취급하려 노력하고 있다. 民法은 제1000조에서 婚姻外의 출생자도 재산상속의 순위 등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婚姻 중의 출생자와 법률상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同法 제985조 1항은 戶主承繼人을 결정하는 순위에 있어 婚姻 중의 출생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戶籍法 제49조 2항 2호에서 出生申告書에 婚姻 중의 출생자인지 아니면 婚姻外의 출생자인지를 구별하여 기재해야 함으로써 가족내의 嫡庶差別이 완전히 불식되어 있지는 않다(정인섭, 1994: 44).

39. 대한민국은 單一民族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人種差別이나 民族間의 紛爭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男兒選好의 價値觀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政治·文化·教育의 분야에 있어서 性에 의한 기회의 차별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第2節 兒童利益 最優先의 原則(協約 第3條)

40. 父母는 兒童成長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므로, 大韓民國의 兒童福祉政策은 부모에게 兒童養育의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아동은 부모의 부적절한 養育이나 虐待로부터 保護받아야 한다.

41. 兒童福祉法 제3조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保護者와 더불어 아동을 健全하게 育成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兒童利益 最優先의 原則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第3節 兒童의 生命, 生存 및 發達權(協約 第6條)

42. 協約의 제6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한 權利와 生存 및 發展과 관련하여, 大韓民國 憲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幸福을 추구할 權利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人權을 확인하고 保障할 의무를 진다”라고 規定함으로써,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人間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을 保障하고 있다. 특히 兒童의 福祉에 관해서는 “兒童이 健全하게 출생하여 幸福하고 健康하게 育成되도록”(兒童福祉法 제1조) 兒童福祉政策이 수립, 실천되고 있다.

43. 少年法 제59조는 “18세 미만인 少年이 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無期懲役에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有期懲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兒童의 生命權을 절대적으로 保障하고 있다.

第4節 兒童에 대한 意思尊重의 原則(協約 第12條)³⁾

44. 親權者는 자녀를 保護하고 교양할 權利와 義務가 있으나, 親權者나 그 대행자가 親權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또는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親權이 상실되고(民法 제924조), 그 대리권 및 관리권에 대하여도 喪失 또는 喪失宣告를 請求할 수 있다(同法 제925조).

3) 아동의 의사 표시권과 의사 존중의 원칙은 부모의 자녀 양육시 아동의 의사가 아동의 성숙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5. 親權喪失의 宣告는 民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검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청구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하며(同法 제924조, 兒童福祉法 제15조), 먼저 家庭法院에 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46. 親權者의 代理行爲가 자녀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債務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녀 자신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民法 제920조), 未成年者인 자녀가 意思能力이 있으면 親權者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가 財產行爲를 할 수 있으며(同法 제5조-8조), 다만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同法 제5조 제1항).

47. 父母의 離婚으로 자녀의 養育者나 親權行爲者를 지정하여야 할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일 때에는 자녀의 의견이 고려되어 진다(家事訴訟規則 제100조). 入養되는 兒童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없이 入養되지 못한다(入養特例法 제4조 2항).

第4章 市民的 權利와 自由

第1節 이름과 國籍(協約 第7條)

48. 아동의 入籍 및 姓과 관련하여 民法 제781조 1항은 “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家에 입적하며(동조 제2항),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法院의 허가를 얻어 姓과 本을 創設하고 一家를 創立할 수 있다(동조 제3항).

49. 戶籍法 제49조는 모든 出生에 대하여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出生申告의 義務는 婚姻 중의 出生자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婚姻外의 出生자인 경우에는 모에게 주어진다(同法 제51조). 棄兒의 경우에 시읍, 면의 장은 法院의 허가를 얻어 棄兒의 姓과 本을 창설한후 이름과 本籍을 정하여 이를 戶籍에 기재하여야 한다(同法 제57조).

50. 出生申告는 出生地의 行政官서에 出生申告書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 때 제출하는 申告書에는 ① 兒童의 姓名, 本 및 性別 ② 兒童의 婚姻 중 또는 婚姻外의 出生자의 구분 ③ 出生의 년, 월, 일, 시 및 장소 ④ 부모의 姓名 및 본 ⑤ 兒童이 입적될 가의 戶主의 姓名 및 本籍 ⑥ 兒童이 一家를 創立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원인과 장소 등을 기재하게 된다. 出生申告書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分娩에 關係한 자가 작성한 出生證明書를 添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1. 婚姻外의 出生자, 棄兒 및 無國籍者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동은 國籍法 제2조에 따라 出生에 의하여 國籍을 취득하도록 保障하고 있다. 이에 따라 出生할 당시에 부가 韓國의 國民이거나 出生하기 전에 부가 死亡한 때에는 死亡한 당시에 韓國 國民이었던 경우,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韓國 國民인 경우,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韓國에서 出生한 경우에는 韓國의 國民이 된다(同法 제2조 제1항). 그리고 韓國에서 발견된 棄兒는 韓國에서 出生한 것으로 추정하여 無國籍을 방지하고 있다(國籍法 제2조 제2항). 그러나 韓國인 女子와 出生地主義 國籍法을 따르는 국가의 男子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無國籍이 될 가능성도 있다.

第2節 身分의 維持(協約 第8條)

52. 韓國의 모든 國民은 戶籍에 登載된다. 戶籍에 기재되는 내용은 ① 本籍, ② 戶主의 姓名 및 戶主와의 關係, ③ 戶籍의 編制 기타 戶籍變動事由의 내용과 생년, 월, 일, ④ 戶主 및 가족의 姓名, 본, 性別, 出生年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⑤ 戶主 및 가족이 된 원인과 년, 월, 일, ⑥ 戶主 및 가족의 親生 부모와 養親의 姓名, ⑦ 戶主와 가족과의 關係, ⑧ 타가에서 입적하거나 타가로 떠난 자에 대하여는 타가의 본적과 戶主의 姓名, ⑨ 戶主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⑩ 기타 大法院 規則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그리고 戶籍에 기재된 내용은 監督法院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53. 韓國 國民은 國籍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① 외국인과 婚姻하여 그 배우자의 國籍을 취득한 자, ②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國籍을 취득한 자, ③ 婚姻으로 인하여 韓國의 國籍을 취득한 자가 婚姻의 소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 國籍을 취득한 자, ④ 자진하여 외국 國籍을 취득한 자, ⑤ 二重國籍者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國籍을 이탈한 자, ⑥ 未成年인 韓國의 國民이 외국인의 認知로 인하여 외국 國籍을 취득한 자, 단 韓國의 國民의 처 또는 養子가 된자는 예외로 한다. ⑦ 외국인으로서는 韓國의 國籍을 취득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 國籍을 喪失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는 國籍이 喪失된다(國籍法 제12조).

54. 韓國의 國籍을 喪失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國籍을 回復할 수 있으며(國籍法 제14조), 부모가 韓國의 國籍을 취득한 때에는 本國法에 의하여 未成年者로 정의되는 자는 부모와 함께 韓國의 國籍을 취득한다(同法 제8조 제2항).

55. 婚姻外의 出生자는 그 生父나 生母가 이를 認知할 수 있으며, 그 부모가 婚姻할 때에는 그 때로부터 婚姻 중의 出生자로 본다(民法 제855조). 자와 그 直系卑屬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認知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있고(民法 제863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檢사를 상대로 하여 認知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同法 제864조).

第3節 表現의 自由(協約 第13條)

56. 表現의 自由 및 情報取得의 自由는 憲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言論, 出版의 自由를 가진다” 및 同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등의 규정에 의하여 保障된다. 同法 제21조 2항은 “言論, 出版에 대한 허가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言論, 出版에 대한 許可 및 檢閱制 禁止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言論의 비판과 감시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人權侵害 行爲를 豫防할 수 있도록 하였다.

57. 表現의 自由에 대한 權利는 精神的 自由의 중핵을 이룰 뿐 아니라 民主 社會의 초석이 된다. 그러나 表現의 自由는 사람의 내적인 사상의 自由와는 달리 절대적 무제한의 自由는 아니며, 社會的 성격을 겸유함으로써 그 內在的 한계가 있다. 따라서 憲法 제21조 4항은 “言論, 出版은 타인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 出版이 타인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侵害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權利의 행사에 따른 특별한 義務와 責任을 명백히 하고 있다.

58. 言論과 出版이 그 內在的 限界를 벗어남으로써 남용되는 경우에 이를 규율하는 法規程으로, 刑法 제309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毀損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民法 제751조는 타인의 名譽나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한 不法行爲에 대해 損害賠償 責任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內亂罪·外患罪의 煽動, 公共秩序의 攪亂 또는 國家秩序 파괴의 선동, 宣傳行爲(刑法 제90조 제2항, 제101조 제2항, 제120조 제2항, 國家保安法 제4조 제1항 제6호, 제7조), 음란문서 배포 등(刑法 제243조)도 각 해당 法條文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59. 憲法은 表現의 自由에 대하여 國家安全保障,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同法 제35조 제2항). 따라서 表現의 自由에 관해서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하고 合理的인 제한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憲法 제76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緊急命令을 발한 경우에는 言論, 出版의 自由도 상술한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 緊急命令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고, 同法 제77조

3항에 의하여 非常戒嚴이 선포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에 의하여 言論, 出版의 自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계엄령 제9조 제1항).

第4節 思想, 良心 및 宗教의 自由(協約 第14條)

60. 憲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同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憲法에 思想의 自由를 保障하는 명문 規程은 없으나, 同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개념속에 사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1. 良心의 自由는 양심의 결정에 관하여 강제, 압력, 간섭을 받지 아니할 自由와 양심상 결정한 내용에 관해 침묵할 自由를 포함한다. 따라서 刑事節次에 있어서 본인이 被疑者 또는 被告人인 경우에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憲法 제12조 제2항).

62. 宗教의 自由는 신앙문제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강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宗教的 確신을 自由로써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信仰의 自由와, 祈禱·禮拜·讀經 등과 같이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모든 樣式, 祝典을 할 수 있는 종교적 행사의 自由, 종교적인 목적으로 會社하거나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종교적 集會 및 結社의 自由,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糾合할 수 있는 宣敎의 自由, 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宗教教育의 自由 등을 포함한다. 憲法 제21조에 規程된 言論, 出版의 自由는 종교활동에 대하여도 保障되므로 각 종교집단은 다른 집단과 차별받지 않고 그들의 製作物을 인쇄하고 배포할 수 있다.

63. 民法 제913조는 “親權者는 자를 保護하고 教養할 權利義務가 있다”고 규정하여 父母나 法定後見人은 자신의 신앙에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시킬 自由를 保障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특정의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에 다니는 學生이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대도시 中·高等學校 無試驗 進學制度는 學生의 宗教의 自由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의 宗教教育에 대한 방침에 의하여 學生이 원하지 않는 特定 宗教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나기도 한다.

第5節 結社 및 集會의 自由(協約 第15條)

64. 憲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言論, 出版의 自由와 集會, 結社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2항은 “言論, 出版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集會, 結社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平和的 集會를 制度的으로 保障하고 있다.

65. 憲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의 安全保障,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法律 規程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남용되지 않도록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第6節 私生活의 保護(協約 第16條)

66. 憲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住居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고, 同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保障하고 있으며, 同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通信의 秘密을 保障하고 있다. 그러나 憲法 제21조 4항에서는 “言論, 出版은 타인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과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 出版이 타인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言論, 出版에 의한 名譽나 權利의 침해를 禁止하고 있다.

67. 憲法 제36조 1항은 “婚姻과 가족생활은 個人的 尊嚴과 兩性の 平等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保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刑法 제33장에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311조)를 규정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侮辱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同法 제35장에 秘密侵害의 罪(제316조-318조), 同法 제36장에 住居侵入의 罪(제319조-322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第7節 情報接近權(協約 第17條)

68. 대한민국의 방송구조는 公·民營 混合體制로 되어 있다. 1987년 처음 제정된 放送法은 放送의 自由와 公的 機能을 保障하고 있으며,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公共福祉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4년 현재 5개 텔레비전 및 13개 라디오 방송국이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만을 製作, 放映하는 교육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다.

69. 1991년도의 전체 發行圖書는 약 18,006만권으로, 그 중 兒童圖書가 14.5%, 學習參考書가 53.8%를 차지하고 있다(體育青少年部, 1992: 279).

70. 兒童과 靑少年의 꿈과 이상을 표현하고 이들이 건강한 文化環境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健全한 靑少年映畵의 製作·普及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좋은 영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화를 선정하여 製作費를 지원하고 있다.

71. 放送의 公적 책임 및 公正性과 公共性을 유지하고, 방송내용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放送審議委員會가 있으며, 각종 공연, 영화, 음반 및 비디오물 심의를 위한 公演倫理委員會, 도서심의를 위한 刊行物倫理委員會가 있다.

72.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내용, 비속어 사용, 폭력장면의 과다 묘사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서 禁止되고 있다. 모든 영화는 ‘國民學生 觀覽可’, ‘中學生 觀覽可’, ‘高等學生 觀覽可’, ‘年少者 觀覽不可’의 4등급으로 구분되어 상영된다.

73. 兒童福祉法 제18조는 아동에게 유해한 興行, 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興行物을 관람시키는 행위, 兒童의 德性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製作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공여, 교환, 전시, 방송하거나 또는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兒童이 健全한 情報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第8節 拷問 및 其他 非人道的 取扱을 받지 않을 權利 (協約 第37條 第1項)

74. 憲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同法 제12조 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欺瞞,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拷問 또는 잔혹한 취급이나 刑罰을 禁止하고 있고,拷問에 의한 自白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證據法的 측면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被害者에게 가하여지지 않도록 保障하고 있다. 刑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人身拘束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刑事被疑者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5. 대한민국은 刑法이나 特別法에서 死刑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형 대상 犯罪를 內亂罪 등과 같은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犯罪, 人命殺傷行爲 등 凶惡犯罪와 같은 매우 중대한 犯罪로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重大犯罪라도 憲法과 法律이 정한 법원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재판을 받을 權利, 신속한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 刑事被告人의 無罪推定,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國選辯護制度, 上訴權 保障, 再審 理由,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등의 규정에 의해 독립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사에 따른 판결 선고와 피고인의 無罪推定, 실질적인 辯護權 行事 保障, 上訴權 및 再審請求權 등을 保障하고 있다.

76. 死刑禁止 年齡은 종래 16세 미만으로 규정하던 것을 1988년에 少年法을 개정하여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同法 제59조에서 18세 미만의 少年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사형대신 15년의 有期懲役刑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少年法은 18세 미만인 少年에 대하여 無期懲役을 선고할 경우에도 無期懲役 대신 15년의 有期懲役に 처하도록 하여 終身刑의 禁止를 명문화하였다(同法 제59조).

第5章 家庭環境 및 代理保護

第1節 父母의 指導와 責任(協約 第5條, 第18條 第2項)

77. 兒童福祉政策의 기본방향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要保護兒童의 保護와 一般兒童의 健全育成이다. 兒童 養育의 책임주체는 부모로서, 民法 제909조 1항은 “未成年인 자는 父母의 親權에 복종한다”고 규정하여 부모를 親權者로 규정하고 있다.

78. 民法 제909조 2항은 부모가 공동으로 親權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면서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家庭法院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다. 同法 제913조는 “親權者는 자를 保護하고 教養할 權利義務가 있다”고 규정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保護 및 教養 義務를 부과하고 있다.

79. 부모가 兒童을 養育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조치로서 임신중의 女子에 대하여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有給休暇를 保障하고 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幼兒를 가진 女性勤勞者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 2회 각각 30분 이상의 有給授乳時間이 法的으로 保障되어 있다(勤勞基準法 제60-61조).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幼兒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幼兒의 養育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 경우 育兒休職期間은 勤勞基準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産前·産後 有給休暇期間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된다(男女雇傭平等法 제11조).

80. 대한민국은 부모가 兒童養育의 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母子福祉法」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母子保健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保護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養育을 도모함으로써 國民保健 向上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兒童福祉法」은 兒童이 健全하게 출생하여 幸福하고 건강하게 育成되도록 그 福祉를 保障함을 목적으로 하고, 「幼兒教育振興法」은 幼兒에게 좋은 教育環境을 마련하여 심신발달의 충실을 기함과 아울러 무한한 잠재력을 신장하게 함으로써 장차 健全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成長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幼兒교육과 保育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嬰幼兒保育法」은 保護者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保護하기 어려운 嬰兒 또는 幼兒를 심신의 保護와 健全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社會成員으로 育成함과 아울러 保護者의 經濟的, 社會的 활동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生活保護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保護를 행하여 最低生活를 保障하고 自活을 조성함으로써 社會福祉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第2節 父母로부터의 分離(協約 第9條)

81. 民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親權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非行 기타 親權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親族(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親權의 喪失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경우에 대하여 엄격한 規程을 두고 있다.

82. 民法 제837조 1항은 “子を 직접 養育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面接交渉權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아동에 대한 面接交渉權을 保障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아동의 面接交渉權은 保障하고 있지 않다. 또한 15세 이상의 아동만이 父母 離婚時 또는 入養時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意思表示權은 保障되지 않는다(家事訴訟規則 제100조, 入養特例法 제4조 제2항).

83. 民法 제837조 2항은 “家庭法院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面接交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아동이 원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4. 刑事訴訟法 제87조는 변호인 등에 대한 구속의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데, 종래에는 통지내용 중 구속의 이유가 없었으며 구속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던 것을 1987년에 同法律을 개정하여 구속의 이유까지 통지하여야 할 것과 구속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規定함으로써 구속된 자의 防禦權 保障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行刑法施行令 제166조는 “소장은 在所者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병명, 병력 및 사망 년월일시를 지체없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第3節 家族의 再結合(協約 第10條)

85. 憲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居住, 移轉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내에서의 居住, 移轉의 自由 및 국외 居住의 自由와 해외여행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다.

86. 외국인인 유효한 旅券과 査證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出入國管理法 제11조(入國의 禁止 등)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환자, 총포 등 소지자, 풍속위해자, 정신장애인 등과 같은 入國의 禁止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 한 대한민국에의 入國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同法 제29조(外國人 出國의 停止)의 규정에 의한 犯罪嫌疑者, 税金滯納者, 기타 출국허용 부적합자 등과 같은 출국의 정지대상이 아닌 한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이 保障된다. 따라서 協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아동 또는 그 父母의 出入國은 出入國管理法 제11조 및 同法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第4節 兒童을 위한 養育費 回收(協約 第27條 第4項)

87. 兒童을 위한 養育費 回收方案은 제6장 제5절 생활수준 참조.

第5節 家庭環境 喪失 兒童(協約 第20條)

88. 아동은 家庭에서 태어나고 키워지며, 家庭은 아동의 成長과 발달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環境이다. 그러나, 아동이 이러한 環境을 가질 수 없거나 家庭에서의 養育이 아동의 健全한 成長과 發達에 沮害要因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兒童福祉法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여 정부는 아동을 福祉施設에 수용하여 필요한 保護措置를 하게 된다. 1993년에 發生한 要保護兒童은 모두 4,451명에 이르는데 이들중 2,940명(64%)은 施設에서 保護되고 있다.

<表 2> 年度別 要保護兒童 發生現況

年度	計	發生類型		保護內容		
		棄兒	迷兒	施設保護	委託保護	入養
1990	5,721	4,213	1,508	3,744	1,134	853
1991	5,095	3,630	1,465	3,414	999	682
1992	5,020	3,294	1,726	3,122	1,212	686
1993*	4,451	3,234	1,217	2,940	943	568

資料: 保健社會部, 『保健社會 統計年譜』, 1993.

* _____, 兒童福祉課 內部資料, 1994.

89. 兒童保護施設의 설립은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전쟁고아들을收容, 保護해야 했던 社會的 要求의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 兒童保護施設의 수는 계속적으로 增加되었는데 1970년대 이후 要保護兒童의 發生減少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要保護兒童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아동을 保護施設에 수용하는 것인데, 이는 代理養育環境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脫施設化(deinstitutionalization), 正常化(normalization), 統合化(integration), 個別化(individualization), 社會化(socialization)를 촉진하는 다양한 代理養育環境의 개발이 큰 과제이다.

90. 施設保護에 대한 대안으로 家庭委託制度가 1985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家庭委託의 종류는 入養委託, 雇傭委託, 有料委託, 無料委託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家庭委託은 脫收容施設化 정책의 하나로서 政策的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그 실적이 부진하고, 入養을 위한 전단계의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家庭委託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① 血統重視 家族制度, ② 經濟的 不安定, ③ 住居空間의 부족, ④ 兒童手當 등 社會保障의 미비, ⑤ 委託保護에 관한 專門社會事業機關의 부족 등이 논의되어진다(장인협·오정수, 1993: 333).

第6節 入養(協約 第21條)

91. 民法과 入養特例法에 근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入養制度는 國內入養과 國外入養으로 구분되어 있다. 入養對象者는 保護施設에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父母나 後見人의 동의없이 入養될 수 없으며, 15세 이상의 아동이 入養될 경우에는 入養對象 아동의 同意가 반드시 필요하다(入養特例法 제4조 제2항). 入養申請者는 入養機關 및 入養相談機關의 家庭調査를 받으며, 國內入養인 경우에는 戶籍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리고 國外入養인 경우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해외이주 허가를 받고, 본적지 관할 家庭法院에서 국적제적을 함으로써 入養이 완료된다.

92. 1993년 1년동안에 모두 3,444명의 아동이 入養되었으며, 그 중 1,154명은 국내에, 2,290명은 국외로 入養되었다(表 3). 國內入養과 國外入養의 비율은 1975년에는 國外入養이 國內入養의 2.8배, 1987년에는 3.3배이던 것이 점차 減少하여 1993년에는 1.9배가 되었다. 그리고 1993년 12월말 현재 國外入養 대상국은 9개국이나 1993년에 이루어진 전체 國外入養의 78.9%가 미국으로 入養된 것으로 나타났다(表 4).

<表 3> 年度別 國內外 入養 實績 推移

年 度	計	國內入養	國外入養	國內入養比率(%)
1958-1960	2,700	168	2,532	6.2
1961-1970	11,481	4,206	7,275	36.6
1971-1980	63,551	15,304	48,247	24.1
1981-1985	50,502	15,424	35,078	30.5
1986-1990	41,322	11,079	30,243	26.8
1991	3,438	1,241	2,197	36.1
1992	3,235	1,190	2,045	36.8
1993*	3,444	1,154	2,290	33.5
계	179,673	49,766	129,907	27.7

資料: 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入養의 實態分析』,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3.

* 保健社會部, 『兒童福祉 事業指針』, 1994.

<表 4> 國外入養 現況과 分布, 1993

나 라	入養兒 數
미 국	1,807
스 웨 덴	60
덴 마 크	139
노르웨이	104
네덜란드	4
호 주	69
벨 지 음	1
프 랑 스	85
룩셈부룩	21

합 계	2,290

資料: 保健社會部 兒童福祉課 內部資料, 1994.

93. 아동의 國內入養 사업은 5개의 入養機關과 시·도별 25개의 國內入養 指定機關 및 시·군·구의 兒童相談所에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國外入養을 減少시키고 國內入養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88년부터는 入養家庭에 대해 所得稅에 人的控除惠澤을 부여하고 있으며, 1989년 11월부터는 養父母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45세 이하에서 5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入養家庭에 대해 주택자금을 최고 3,500만원까지 융자하고 있다.

94.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發生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保護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로 시작된 國外入養은 4개 民間機關에서 관장하고 있다. 國外入養도 國內入養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나, 인종·문화·언어의 異質적인 環境에서 아동이 적응하고 成長해야 하고, 入養兒 및 養父母는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事後管理가 행해지고 있다. 入養後 國적취득이 되면 外國의 入養機關은 國적취득의 사실을 우리나라 入養機關에 통보하고, 우리나라의 入養機關은 이를 法務部에 보고하여 國籍離脫申告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國적을 취득할 때까지 外國의 入養機關은 入養家庭에 대한 아동의 適應狀態를 6개월에 1회 이상 관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린이의 사진과 함께 우리나라 入養機關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95. 1993년에 入養된 아동의 86.5%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23.5%는 家庭貧困, 一時同居, 父母死亡, 父母離婚 등을 이유로 入養이 의뢰된 경우였다.

96.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入養斡旋을 禁止하기 위하여 兒童福祉法 제18조 6항에서는 正當한 권한을 가진 斡旋機關外의 자가 金품취득을 목적으로 兒童養育을 알선하는 행위를 禁止하고 있다.

第7節 不法海外移送 및 未歸還(協約 第11條)

97. 未成年者를 略取 또는 誘引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懲役에 처하며 (刑法 제287조), 특히 國외에 移送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하거나 國외에 이송한 자는 3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하도록 (同法 제289조) 규정하여, 國외 불법이송 관련 犯罪行爲를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의 國外 不法移送 退治에 노력하고 있다.

第8節 兒童虐待, 遺棄 및 身體的, 心理的 回復과 社會復歸 (協約 第19條 및 第39條)

98. 아동의 基本權利와 욕구가 침해되는 경우에 사회는 이에 개입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兒童福祉法, 未成年者保護法, 勤勞基準法, 刑法에 명시되어 있다. 暴力과 虐待 등으로부터 아동을 保護하기 위하여 刑法 제287조 (未成年者의 略取, 誘引)에서 “未成年者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懲役 10년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에서는 刑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犯行目的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목적인 경우에는 최고 無期懲役,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최고 死刑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加重處罰하고 있다(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제5조의 2, 제1항-3항, 제6항-8항).

99. 兒童福祉法 제3조는 모든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保護하고 健全하게 育成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同法 제18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虐待, 搾取 등의 禁止行爲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違反한 경우에는 同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100. 아동의 遺棄는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社會問題들 중의 하나이다. 棄·迷兒의 發生率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棄兒의 發生率은 迷兒의 發生率의 2-3배나 되어, 棄兒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表 2). 특히 가정문제 등으로 인하여 遺棄된 아동은 국가가 保護하게 되는데, 주로 保護施設에 수용하여 保護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1. 대한민국에서는 父母나 教師에 의한 教育的인 체벌이 “사랑의 매”로 인식되는 유교적 문화와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다. 따라서 訓育과 身體的 虐待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兒童虐待의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02. 虐待받는 兒童의 治療, 發見 및 豫防을 위한 민간기구로서는, 1985년에 서울시立 兒童相談所가 설립한 ‘兒童權益保護申告所’와 1989년에 설립된 ‘한국 兒童虐待豫防協會’의 하부조직인 ‘兒童虐待地域申告센터’가 있다. 또한 1990년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가 교육폭력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설치한 ‘호루라기상담전화’도 虐待받는 아동의 治療, 發見 및 豫防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103. 대한민국의 兒童虐待 및 放任에 관한 社會的 措置는 초보적 단계인 발견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고, 治療와 豫防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專門的인 개입을 위한 法的 장치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兒童虐待 申告의 法的 制度化가 문제해결의 선결방안으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104. 이에 따라 정부는 兒童福祉 長期發展計劃의 일환으로 虐待兒童의 一時 保護 示範事業을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1994년과 1995년에 시행될 제1 단계 사업은 虐待兒童 一時保護事業指針의 마련과 兒童虐待豫防協會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제2단계('96 - '97)에서는 6대도시 公立 兒童相談所에 虐待 兒童申告센터의 시범설치와 虐待兒童 및 가정상담 전문인력의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 제3단계('98 이후)에서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15개 시·도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兒童福祉法令의 虐待 관련 規程을 정비할 계획이다.

第9節 養育 및 保護機關에 대한 審査(協約 第25條)

105. 兒童福祉法 施行令 제2조에 의하면 兒童福祉施設이란 兒童相談所, 嬰兒 施設, 育兒施設, 兒童一時保護施設, 兒童職業保導施設, 助産施設, 兒童專用施設, 教護施設, 兒童入養委託施設, 情緒障礙兒施設, 自立支援施設을 말한다. 1993년 12월말 현재 全國 278개 施設(嬰·育兒院, 一時保護施設, 教護施設, 自立支援施設 등을 포함한 모든 兒童福祉施設)에 20,194명이 收容·保護되고 있으며, 전체 시설당 평균 兒童數는 73명이고 育兒院의 경우는 78명이다.

<表 5> 兒童福祉施設 現況, 1993

	施設數	收容人員數	施設當平均兒童數
영아원	38	2,260	59
육아원	219	16,914	78
직업보도	8	346	43
교호	7	545	78
자립지원	6	129	18
계	278	20,194	73

資料: 保健社會部, 『兒童福祉 施設閱覽表』, 1994.

<表 6> 年度別 嬰·育兒 保護施設數 및 兒童數

年度	施設數	兒童數
1975	350	32,996
1980	287	23,357
1985	271	24,430
1990	261	22,535
1991	259	21,333
1992	257	20,286
1993*	256	19,174

資料: 保健社會部, 『保健社會 統計年譜』, 1993.

* _____, 『兒童福祉 事業指針』, 1994.

106. 要保護兒童의 發生 건수의 지속적인 減少로 兒童福祉施設과 그러한 施設에서 保護되는 아동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향후 兒童福祉施設에서 保護되는 아동은 全體兒童의 0.15%인 2만명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노혜련, 1993).

107. 시·도지사, 구청장이 兒童保護施設의 조직 및 운영, 사업전반, 그리고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지사, 구청장에게 분기마다 수시 지도를 실시하고,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통하여 兒童保護施設의 운영상태를 지도 및 감독한다.

第6章 基礎保健 및 福祉

第1節 生存 및 發達(協約 第6條 第2項)

108. 대한민국은 1970-1980년대를 거쳐 급속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아동의 保健 및 營養面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1980년에는 出生兒 1,000명당 17.3명이던 嬰兒死亡率이 1990년에는 12.8명의 수준으로 저하되었으며, 1992년에도 12.8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母性死亡率은 1985년에 3.4명(10,000명당)이었으나, 1988년에는 3.0명까지 그 비율이 낮아졌다. 1991년의 產前管理 受診率은 95.1%이며, 施設分娩率은 98.9%이다(保健社會部, 1993a: 6).

109. 母子保健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母子保健事業은 임신부 등록관리사업, 임신부와 嬰幼兒의 건강진단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의 障礙發生豫防事業 등을 포함한다. 1993년 현재 母子保健서비스를 제공하는 施設로는 保健所(267개소), 保健醫院(15개소), 母子保健센터, 保健支所(1,329개소) 및 保健診療所(2,039개소)가 있으며 1차 保健醫療機關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박인화·황나미, 1993: 21). 전국에 77개소의 母子保健센터가 保健所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11개소의 民間 母子保健센터, 12개소의 가족계획협회 산하 母子保健센터가 母子保健事業에 참여하고 있다.

110. 兒童保健의 주요 목표는 產前 및 產後管理를 통해 兒童人口의 死亡率, 有病率, 障礙率을 減少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1987년부터 임신부에게 '母子保健手帖'을 발행하고 있다. 현재 嬰幼兒의 정기 검진은 생후 6개월과, 18개월 후에 실시하고 있으며, 障礙發生豫防을 위해 정부는 연간 5만명의 신생아에게 保健所를 통하여 선천성대사이상을 위한 검진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서광윤, 1992: 7). 또한 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에게 필요한 BCG, DPT, 폴리오, 홍역 등의 基礎 豫防接種을 무료로 또는 거의 무료로 가까운 비용으로 실시하고 있다.

<表 7> 嬰·幼兒 豫防接種率, 1989

(單位: %)

B C G	D P T			폴 리 오			紅疫	MMR	肝炎
	1次接種	2次	3次	1次	2次	3次			
93.7	98.2	96.4	93.0	98.2	96.4	93.0	92.4	96.3	71.0

資料: 김혜련·박인화·황나미·이원신·박주문, 『全國 嬰幼兒 豫防接種 實態調査』,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111. 여성의 經濟活動參加率이 높아짐에 따라 母乳授乳 實踐率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모유수유 실천율은 1981년의 69%(혼합수유시 85%)가 1994년에는 57%(혼합수유시 74%)로 減少하였다(韓國保健社會研究院 內部資料).⁴⁾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니세프 韓國委員會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母乳授乳 實踐運動이 病院과 民間團體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12.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질병은 폐염,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질환이다(박인화·황나미, 1993: 118).

113. 신생아의 障礙出顯率은 0.6%로 나타나고 있다(박인화·황나미, 1993: 118).

114. 어린이의 주된 死亡原因은 연령별로 0세의 경우 先天性異常, 그 이후의 연령에서는 不意의 事故로 나타났다(박인화외, 1994: 20-24). 의학의 발달로 인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91년에 14세 이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수는 1,566명이었으며, 이는 같은 해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1.7%에 해당한다.⁵⁾

115. 정부는 교통사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交通事故 줄이기 5個年計

4) 유럽과 일본의 모유혼합수유율은 80-90%이다(박인화·황나미·정기원·오미영, 1994: 12).

5) 박응원, “해외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실태 조사연구 (2)”, 『교통안전』, 1993년 5월호, pp. 20-23. 노혜련, 1993, p. 16에서 재인용.

劃(1992-1996)」을 수립하였는데, 계획의 성공적인 실천에 의해 1996년 이후에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交通事故 줄이기 元年」인 1992년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수는 11,585명으로 1991년에 비해 13.7%가 減少하였고,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은 1,114명으로 그 전 해에 비해 거의 30%가 減少하였다.⁶⁾

116. 현재 학교에서는 交通安全教育이 여러 교과목에 분산되어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現場教育은 全無한 상태이고 교사를 위한 지침서와 시청각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特別法에 의해 설립된 安全交通振興公園은 10학급 이상의 학교에 생활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交通安全教育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를 “어린이 保護區域”으로 지정하여 交通安全 施設物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각종 交通規制를 實施함으로써 어린이 交通安全을 圖謀하고 있다(노혜련, 1993: 16).

117. 1967년에 제정된 ‘學校保健法’은 “學校의 保健管理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게 함으로써 學校教育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學校保健의 구체적 실천방법의 하나인 學校給食은 島嶼僻地型, 農漁村型, 都市型으로 구분하여 정부에서 給食 施設費, 運營費, 食品費를 지원하고 있으며, 私立學校의 경우 자체부담으로 운영한다. 1994년 1월 현재 國民學校 給食率은 國民學校의 39%, 國民學生의 22%로, 1996년말까지 모든 國民學校에 學校給食을 운영할 계획이다.

第2節 障礙兒童(協約 第23條)

118. 1993년말 현재 전체 아동의 0.76%인 10만여명이 障礙兒童인 것으로 추산된다.⁷⁾ 이들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체장애, 정신지체, 정신적 결함 등으

6)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1993, p. 101. 노혜련, 1993, p. 16에서 재인용.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사망은 스웨덴의 경우 40여명, 독일 160여명, 그리고 영국 400명의 수준이다.

7)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아동수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이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이 1990년도에 조사한 재가장애발생출현율을 1993년도 아동인구수에 적용하여 산출한 수와 1993년도 장애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수를 합하여 장애아동수를 산출하였다.

로 日常生活과 社會生活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으로서, 障礙人福祉法(제1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에 대한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의 責任이 있다. 대부분의 障礙兒童은 집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나 장애의 상태가 중중이어서 자립이 곤란한 경우 再活에 필요한 相談, 治療 또는 訓練과 療養을 위하여 施設에 수용된다. 전체 障礙兒童의 약 6.5%인 6,443명이 1993년말 현재 152개소의 障礙再活施設에 수용되고 있다. 그 중 3개소는 障礙嬰兒施設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兒童과 成人이 함께 수용되는 施設이다(保健社會部, 1994c: 5-6).

119. 障礙人福祉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社會參與와 平等의 保障으로, 障礙兒童과 관련된 법으로는 障礙人福祉法, 障礙人 雇傭促進 등에 관한 法律, 特殊教育振興法 등이 있다. 1988년에 개최된 서울 장애인올림픽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障礙人의 再活과 社會參與 擴大 등 福祉增進을 위하여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障礙人福祉對策委員會」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福祉對策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障礙人福祉綜合對策의 주요 내용은 障礙發生 豫防, 醫療保障, 再活用具의 普及, 教育機會의 擴大, 就業保障, 所得保障과 經濟的 負擔 輕減, 障礙人福祉施設의 擴大, 生活環境 改善, 障礙人福祉 傳達體系의 改善, 專門家 養成 및 國民理解 增進 등이다.

<表 8> 全國 在家障礙兒童의 年齡別·性別·障礙種類別 障礙出顯率 (單位: 천명당)

年 齡	計	性 別		障 碍 種 類 別				
		男子	女子	肢體	視覺	聽覺	言語	精神
0-4	2.61	3.46	1.61	0.70	0.43	0.46	1.04	1.23
5-9	5.69	6.96	4.30	2.02	1.36	0.71	1.83	2.32
10-14	7.46	8.82	6.01	2.36	1.49	0.99	2.80	2.89
15-19	8.28	10.38	6.10	3.42	1.39	1.24	3.00	2.92

資料: 김국도·김경숙·오영호·하길웅, 『障礙人實態調查報告』,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1.

120. 障礙人 就業助長의 실현을 위해 「障礙人 雇傭促進 등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을 障礙人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도 常用勤勞者 총수의 1-5% 범위내에서(基準雇傭率은 2%)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1988년부터 障礙人登錄制를 실시하여 障礙人 手帖을 교부하고 登錄障礙人에 대하여는 職業訓練의 기회 부여,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별도 선발, 就業斡旋, 자동차 구입시 면세조치, 補裝具 支給 등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21. 障礙人對象 醫療再活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병원은 총 8개소로, 그 중 1개소는 兒童專用 再活醫院이다. 이들 재활병원의 운영비는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구성되며, 200병상 규모의 「國立專門再活醫療센터」가 1994년에 건립되어 운영중이다. 1994년 현재 障礙人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治療와 教育 및 職業訓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단위에 건립된 21개 障礙人 綜合福祉館과 肢體, 視覺, 聽覺, 言語 및 精神遲滯 등 일정유형 障礙人의 福祉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13개 短種福祉館이 있다.

122. 心臟의 發育不振, 畸形 및 機能障碍 등을 지니고 태어나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중 가정이 가난하여 수술비의 자부담이 어려운 어린이에게는 1984년부터 專門的 民間團體인 韓國心臟財團이 수술을 알선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1994년까지 9,242명의 어린이가 韓國心臟財團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았으며, 이 사업에 43개의 醫療機關이 참여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못 받고 있는 기타 질환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韓國心臟財團이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第3節 保健서비스(協約 第24條)

123. 1977년에 醫療保險制度가 도입되고, 1988년 1월에는 農漁村地域 醫療保險이, 1989년 7월에는 都市地域 醫療保險이 실시됨으로써 全國民의 醫療서비스 접근이 향상되었다. 1991년 현재 全國民의 90%이상이 醫療保險에 가입되어 있으며, 地域 醫療保險費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124. 全國民 醫療保險實施와 함께 醫療機關의 機能分擔을 위하여 醫院(1차 醫療診療)은 외래진료, 中小病院(2차 醫療機關)은 외래 및 입원진료기능, 그리고 綜合病院(3차 診療機關)은 의뢰된 외래환자의 입원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런 체제하에서 小兒診療가 행해진다.

125. 1992년 현재 兒童專用病院은 2개소가 있고, 소아과 전문의는 2,188명으로 전과목 전문의 24,994의 8.8%이며, 매년 약 200명의 소아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조재국·이윤현, 1993: 16-23). 醫療機關의 약 85%가 民間機關으로 1차 診療機關인 소아과 의원은 1,155개소, 2차 診療機關인 병원급은 428개소, 3차 診療機關인 종합병원은 34개소이다(박인화·황나미, 1993: 23).

126. 1992년도에 행해진 '國民健康 및 保健意識行態調査'에 따르면, 兒童의 人口 100명당 罹患率은 0-4세가 50%, 5-9세는 27%, 10-19세는 16%이고(송건용·남정자·최정수·김태정, 1993: 30), 이들의 醫療機關 訪問率은 0-4세가 49%, 5-9세가 25%, 10-19세가 13%로 나타나고 있어(송건용외, 1993: 193), 0-4세의 아동이 罹患率도 높고 醫療서비스의 이용도 높음을 알 수 있다.

第4節 社會保障 및 兒童保護施設(協約 第26條 및 第18條 第3項)

127. 국가는 社會保障, 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憲法 제34조 2항에 밝히고 있다. 現行 社會保障制度 중에서 아동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고, 生活保護法上的 生活保護對象者안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保護者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이들은 生計保護(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의 지급), 教育保護(中學校와 실업高等學校의 학비 전액 지원) 및 醫療保護를 받는다. 1993년말 현재 生活保護對象兒童은 전체 生活保護對象者 2,001천명중 25.9%인 518천명으로(保健社會部, 1994a: 6), 全體 兒童의 3.7%에 해당한다. 또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生計費, 兒童教育 支援費, 就業訓練費 및 訓練期間 중 生計費, 兒童養育費를 支給하고, 事業資金과 住宅資金을 貸與한다(母子福祉法 제12-13조).

128. 産業化와 經濟成長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가족은 점차 小家族化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女性就業人力, 특히 就業母가 增加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經濟活動參加率은 1992년 현재 47.3%이고, 전체 기혼여성의 46.7%인 5,718천명이 就業하고 있다(統計廳, 1993). 대한민국의 保育서비스는 1991년에 제정된 "嬰幼兒保育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 '託兒'의 용어가 '保育'으로 대치되고, 보육사업은 보사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저소득 가족에 대한 보육료의 지원을 규정하는 등 과거 어느

때의 法的 對策에 비해 진일보한 法的 및 行政的 措置가 이루어졌다. 保育施設의 수는 1993년말 현재 5,490개소로서 추정 保育對象兒童 109만명의 15.3%인 153천명이 보육되고 있다.

129.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保育需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린이의 健全한 保育과 맞벌이 家庭의 自立生活 支援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社會福祉分野의 주요 政策事業으로 保育事業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1990년말에는 1,919개소에 불과하던 保育施設이 1993년말 현재 5,490개소로 늘어나 年평균 95%增加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保育兒童數는 48천명에서 153천명으로 늘어나 年평균 106%의 增加를 기록하였다. 保育事業을 위해 정부가 투자한 예산은 1990년에 191억원에 불과했으나, 1993년에는 985억원으로, 그리고 1994년에는 1,188억원으로 늘어나 年평균 75.4%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表 9> 施設別 保育現況

	1990	1991	1992	1993*
국공립 보육시설	360	503	720	837
민간 보육시설	39	1,217	1,808	2,419
직장 보육시설	20	19	28	29
가정 보육시설	1,500	1,931	1,957	2,105
계 (개소)	1,919	3,670	4,513	5,490
아동수 (명)	48,000	89,441	123,297	153,270
예산 (억원)	191	419	616	985

資料: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白書』, 1993.

* _____, 兒童福祉課 內部資料, 1994.

130. 부모들은 一般兒童이 障礙兒童들과 混合되어 보육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1996년까지 障礙兒全擔 保育施設 6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131. 현재 정부는 정확한 보육수요추계를 위한 조사를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 의뢰하고 있으며, 1997년까지 低所得層의 保育對象兒童 전체를 보육하기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保育施設을 新築하는 한편, 아동의 연령별 발

달단계에 알맞는 良質의 保育서비스 提供을 위해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있다.

第5節 生活水準(協約 第27條 第1項, 2項, 3項)

132. 대한민국은 家族成員의 福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족이 지며, 社會와 國家가 二次的인 責任을 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要保護對象者 중심의 選別主義 福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福祉機能 強化와 要保護者의 發生豫防이 강조된다.

133. 要保護兒童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는 公的扶助事業에 結緣事業을 추진하고 있다. 結緣事業은 公的扶助의 실질적 급여수준이 最低生計維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施設保護兒童, 少年/少女家長世帶, 母子家庭의 兒童들에게 후원자가 매월 1구좌당 일정액의 단위로 후원금을 보내고, 방문과 초청을 통하여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制度이다. 이러한 結緣事業은 1981년부터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專門社會事業機關인 韓國어린이財團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134. 少年/少女家長世帶에 대한 후원자 結緣사업⁸⁾은 정부가 1985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要保護兒童의 施設入所를 예방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地域社會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脫施設化와 統合化 運動의 맥락에서 발전된 대한민국 특유의 제도이다. 少年/少女家長世帶는 부모의 死亡, 疾病, 心身障擧, 家出, 離婚 및 受刑 등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少年/少女가 가계를 책임지는 세대로 정부는 이들에게 經濟的으로 필요한 最低의

8) 정부의 공적부조와 민간단체들의 가정복지사업이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후원자 結緣사업은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문제를 하나의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간 차원에서의 참여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소년/소녀가 한 세대의 가장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성인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아동 및 청소년은 보호·양육되는 기본적인 가족의 형태로 간주될 수 없고, 또한 아동권리국제협약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2/3 이상이 친척이 있으므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친척, 법정 후견인이나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성인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가정위탁제도 등의 도입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양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노혜련, 1993: 72-74).

生活를 保障해 줌으로써 地域社會에서 成長할 수 있도록 하며, 非行靑少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健全한 社會人으로 育成되도록 保護하고 있다. 이들 少年/少女家長世帶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199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83세대(212명의 세대원)가 增加하여 총 7,322세대(14,293명의 세대원)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1992년말 현재 少年/少女家長世帶의 結緣율은 세대단위로 98.6%(세대원의 86%)이고, 실질적 후원금은 結緣兒童 1인당 월평균 25,000원정도이다(保健社會部 兒童福祉課 內部資料).

<表 10> 少年/少女家長世帶의 現況

(單位: 세대, 명)

年度	世帶數	世 帶 員					
		計	未就學	國民學生	中學生	高等學校	其他
1985	6,696	13,778	142	3,593	4,009	2,998	3,036
1989	6,029	13,233	450	3,749	3,814	1,632	3,588
1990	4,901	11,125	410	3,356	3,133	1,135	3,091
1991	6,902	13,985	121	3,650	4,093	3,194	2,927
1992	7,089	14,081	136	3,521	4,404	3,374	2,646
1993*	7,322	14,293	119	3,331	4,710	3,622	2,511

資料: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統計年譜』, 1993.

* _____, 兒童福祉課 內部資料, 1994.

第7章 教育, 餘暇 및 文化的 活動

第1節 教育(協約 第28條)

135. 대한민국 憲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權利를 가지며, 그 保護하는 자녀에게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여하고 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憲法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136. 憲法の 規程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教育法에서는 모든 국민이 6년의 初等教育과 3년의 中等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밝히고(제8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義務教育을 無償으로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한 施設確保에 필요한 조치 및 國民學校와 中學校의 설치·경영의무를 부여하고 있다(同法 제8조 제3항, 제4항 및 제86조 제1항).

137. 대한민국의 현행 學校制度는 國民學校 6년, 中學校 3년, 高等學校 3년, 大學 4년의 6-3-3-4제를 근간으로 하는 單線型 學制를 채택하고 있다. 1993년 현재 학생수는 전국민의 4분의 1에 이르는 1,146만여명(이 중 여학생은 전체학생의 45.8%인 5,253,138명), 교원수는 41만여명, 학교수는 19,790여개에 이르고 있다. 교육에 대한 지원체제로는 중앙정부의 教育部와 특별시·직할시·도의 教育廳(15개), 그리고 시·군의 下級教育廳(179개)이 있다. 교육여건의 지표로 사용되는 학급당 학생수는 1993년 4월 현재 國民學校 38.7명, 中學校 48.5명, 高等學校 47.7명으로 나타나며, 제7차 經濟社會發展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96년에는 國民學校 37.8명, 中學校 47.5명, 그리고 高等學校 47명 수준으로 될 전망이다.

138.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학교에 처음으로 入學 또는 轉學하는 아동도 대한민국의 아동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教育法施行令 제96조의 2). 1990년 11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0-19세의 외국아동은 6,260명(통계청, 1990: 312-315)이며, 3개 외국인학교를 포함해서 58개의 外國兒童의 教育을 목적으로 설립한 教育團體 및 학교에 약 7,200명(男子 3,700명, 女子 3,500명)의 외국아동 및 한국아동이 교육을 받고 있다.

<表 11> 學校 및 學生의 現況, 1993

(單位: 개교, 개반, 명)

區 分	學 校 數	學 級 數	學 生 數	學 級 當 學 生 數
유치원/유아원	9,484	18,841	288,020	15
국민학교	6,057	111,870	4,336,833	38
중 학교	2,590	49,639	2,410,116	48
고등학교	1,757	43,381	2,069,218	47

資料: 教育部 普通教育局 內部資料, 1994.

가. 學校의 種類

1) 國民學校

139. 1950년에 시작된 初等教育過程의 無償義務教育은 1993년말 현재 거의 완전하게 실시되고 있다. 다만, 學齡兒童이 불구, 폐질, 병약, 발육 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免除 또는 猶豫할 수 있도록 하여 획일적인 의무부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教育法 제98조 및 教育法施行令 제102조). 國民學校의 教育內容은 '國民生活에 필요한 기초적인 初等普通教育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0.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자녀로서 우리나라의 학교에 최초로 入學 또는 轉學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발행한 出入國에 관한 事實證明書 또는 居住申告證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경우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봄으로써 대한민국의 아동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教育法施行令 제96조의 2).

2) 中學校

141. 國民學校를 졸업한 學生은 中學校過程의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으며, 이는 또한 義務이기도 하다(憲法 제31조 및 教育法 제8조). 다만, 中學校 教育을 無償教育으로 실시함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형편에 따라 1985년 이후에는 도서벽지 지역에, 1992년 이후에는 군지역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島嶼·僻地 教育振興法 및 中學校 義務教育 實施에 관

한 規程). 1993년 4월 현재 國民學校 卒業生의 中學校 進學率은 99.9%에 이르고 있으며, 中學校 과정에 대한 無償教育 實施率은 17.3%이고, 이 비율은 1994년에 25.1%에 이를 전망이다. 中學校의 教育內容은 '國民學校에서 받은 教育의 기초위에 中等普通教育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社會科目에서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질병, 빈곤, 가뭄과 기아, 人口過剩, 環境의 破壞, 汚染 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3) 高等學校

142. 中學校를 졸업한 學生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實業系 高等學校 또는 一般系 高等學校에 진학하게 되며, 高等學校 進學率은 1993년 4월 현재 99.1%이고, 실업계 학생수와 일반계 학생수의 비율은 1993년 4월 현재 약 35:65이다. 高等學校는 '中學校에서 받은 教育의 기초위에 高等普通教育과 專門教育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교과에 걸쳐 국제적 교류와 상호의존 관계의 심화에 따른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국가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내용과 世界의 여러 民族間의 相互依存性을 강조하고 있다.

4) 高等教育機關

143. 대한민국의 高等教育에 대한 教育機會는 비교적 폭넓게 열려져 있다. 1993년 현재 高等教育의 적령인 18-21세 人口의 56.5%인 1,995,047명이 297개 高等教育機關에 재학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技術保護主義 擴散에 대비하고 製造業部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인력 양성 공급을 위하여 매년 대학정원을 6,000명, 그리고 전문대학의 정원을 15,000명씩 증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高等教育機會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144. 高等教育에 대한 기회를 保障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학비조달이 어려운 大學生에게 長期低利로 學資金을 融資해 준은 물론 정부가 이자의 2분의 1을 부담하고 있으며, 원리금의 상환도 졸업후 5년간 상환하게 하고 있다.

5) 幼兒教育機關

145. 만 3세부터 國民學校 입학전까지의 幼兒를 教育하고, 적당한 環境을 주어 心身의 發育을 助長하고, 健全한 國民으로 成長하게 하기 위하여 幼稚園

또는 幼稚園을 두고 있다(教育法 제146조 내지 148조 및 幼兒教育振興法 제1조). 1993년 4월 현재 취원률은 47.3%에 그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幼兒教育機關을 확충하여 1998년에는 60%수준이 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6) 特殊學校

146. 障礙學生을 위한 학교는 教育法 제143조내지 145조의 규정에 의한 特殊學校가 있으며, 特殊教育振興法 및 同法 施行令을 통하여 障礙學生에 대한 教育을 지원하고 있다. 特殊教育의 실제 운영형태는 지역의 형편, 障礙人의 분포, 장애 정도에 따라 특수학교, 복지시설내 특수학교의 분교장, 장애별 특수학급, 복지시설내 특수교사 파견, 在宅巡迴教育 등으로 다양하다. 特殊教育은 모든 教育對象者에 대하여 無償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가 전액 면제되며, 통학버스비와 기숙사 비용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私立의 特殊學校에 대하여도 國·公立學校와 동일한 수준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特殊教育豫算은 1992년에 750억원, 그리고 1993년에는 832억원(총 教育豫算의 0.85%)에 이르고 있다.

147. 教育部는 1993년 현재 46,000명의 重度障礙兒童과, 198,000명의 輕度障礙兒童(총 24만명)을 特殊教育對象者로 추정하고 있다.⁹⁾ 重度障礙兒를 위한 特殊學校는 1993년 4월 현재 視覺障礙 12개교, 聽覺障礙 20개교, 精神遲滯 57개교, 肢體不自由 11개교, 情緒障礙 3개교의 총 106개 학교가 있으며, 20,985명을 수용하고 있다. 輕度障礙兒를 위한 특수학급은 3,321개 학급에 28,210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特殊教育對象者의 약 20.2%(重度障礙兒의 45.7%, 輕度障礙兒의 14.3%)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79.8%는 特殊教育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9) 教育部 의무교육과에서는 중도장애아를 학령아동 5-17세의 0.46%, 경도장애아를 1.88%, 총 2.44%를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수는 조사기관에 따라서 상이한데, 그 예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1989)는 특수교육대상아동을 학령아동의 7.19%인 71만명으로 추정하고, 그 중 7%만이 수혜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유기성, 1991: 42),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특수교육대상아동의 35%가 혜택을 받고 있다(김승국, 1992: 21)고 하여, 통계상의 상당한 불일치를 보여 준다.

<表 12> 特殊教育現況, 1993

(單位: 개교, 개학급, 명)

區 分	障 碍 別	學 校 數	學 級 數	學 生 數
특 수 학 교	시각장애	12	154	1,359
	청각/언어장애	20	396	4,007
	정신지체	57	1,117	12,598
	지체부자유	14	242	2,568
	정서장애	3	45	453
	계	106	1,954	20,958
특수학급	일반학교	2,638	3,321	28,210

資料: 教育部 普通教育局 內部資料, 1994.

148. 정부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33개의 特殊學校를 新設하고 特殊學級 3,350학급을 운영하여 障碍兒童 全원에 대한 特殊教育의 수혜범위 증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特殊教育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장학력 확보를 위해 시·도 教育廳에 特殊教育을 전담하는 장학사를 이미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教育部 및 教育廳 職制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障碍別 教育方法 및 內容의 研究, 學習資料 開發·普及 및 특수교원 연수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特殊教育機關에서 수행되는 교수학습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國立特殊教育院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7) 私立學校

149. 전체 학교에서 私立學校가 차지하는 비율은 31.9%이고, 총학생수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私立學校와 私立學校에 다니는 學生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3.9% 및 74.4%로, 高等教育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表 13> 私立學校現況, 1993

(單位: 개교, 명, %)

區 分	總學校數	私立學校數	總學生數	私立學生數
유치원	8,515	4,001(47.0)	469,380	356,048(75.9)
국민학교	6,057	76(1.3)	4,336,252	67,392(1.6)
중 학교	2,590	700(27.0)	2,410,874	616,287(25.6)
고등학교	1,757	893(50.8)	2,069,210	1,281,383(61.9)
전문대학	128	120(93.7)	456,227	434,765(95.3)
대 학	138	102(73.9)	1,109,622	825,532(74.4)
기 타	605	424(70.0)	611,675	176,085(28.8)
계	19,790	6,316(31.9)	11,463,240	3,757,492(32.8)

資料: 教育部, 『教育統計年譜』, 1993.

8) 職業教育

150. 高等學校에서의 職業, 技術教育은 實業系 學校와 一般系 學校에서 이루어진다. 實業系 高等學校의 教育目的은 실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기술인을 양성함으로써 職業選擇의 機會를 확대함과 아울러 信念을 가지고 職業에 종사하는 태도를 갖추게 하는데 있다. 一般系 高等學校의 職業教育은 졸업후 就業希望者나 大學進學 拋棄者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職業學校, 工高附設 職業過程 및 職業訓練 委託教育 등을 통해 實業系 高等學校에서 이루어지는 職業教育 內容과 방법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151. 職業訓練制度는 정규 교육과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급변하는 産業社會의 人力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1967년에 職業訓練法의 제정으로 정식 도입된 이래 1976년에 현행의 職業訓練基本法이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산업인력 양성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이유로 上級學校에 進學하거나 就業하지 못하고 職業能力이 없이 사회에 배출되는 청소년이 매년 2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정부는 職業訓練을 희망하는 14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職業訓練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職業訓練에 필요한 비용은 職業訓練을 실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

다. 그리고 職業訓練을 마친 뒤에도 이들이 健全한 職業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의 職業安定機關을 통하여 적극 就業을 斡旋하고 있다.

9) 기타 小數者를 위한 教育制度

152. 定規學校에 진학할 형편이 못되는 勤勞靑少年 등을 위한 學校制度로 放送通信中(高等)學校, 産業體附設學校 및 産業體附設特別學級을 두고 있다(教育法 제103조의 3, 제103조의 4, 제107조의 3, 제107조의 4).

153. 그 외에도 檢定考試 合格者, 社會教育施設에의 教育過程 履修者 및 기타 少年院法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들에게도 정규학교 졸업자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教育機會 擴大에 힘쓰고 있다(教育法施行令 제79조 내지 제82조 및 少年院法 제29조).

154. 少年院法에서는 비행으로 인하여 교육기회를 잃은 학생들에게 學歷取得의 機會를 부여함으로써 퇴원 후 학업좌절로 인한 再非行의 惡循環을 豫防할 목적으로 教科教育少年院의 設置와 運營에 관한 規程을 두고 있으며, 이를 教育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少年院法 제29조 제1항).

나. 教育豫算

155. 대한민국은 教育投資가 개인발전 및 국가발전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教育豫算의 安定的 確保에 큰 비중과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憲法 제31조가 保障하는 국민의 教育權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관건이 되는 것으로서, 教育豫算은 地方教育財政의 支援, 私學財政의 支援, 實業系 教育 및 職業教育 強化, 敎員의 再教育 및 教育機會 擴大를 위한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教育豫算의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表 14> 教育豫算의 規模

(單位: 10억원)

	GNP (A)	政府 豫算 (B)	教育部 豫算 (C)	地方 教育 豫算(D)	義務 教育 費(E)	構成比 (%)		
						C/A	C/B	E/C
1985	78,088	12,532	2,492	2,124	1,557	3.2	19.9	62.5
1990	171,468	27,464	5,595	4,837	2,642	3.3	20.4	47.2
1993	256,685	41,936	9,880	8,684	4,301	3.7	23.6	43.5

資料: 文教部, 『教育統計年譜』, 1993.

156. 學生들의 出席을 높이고 缺席으로 인한 脫落을 防止하기 위하여 教育法施行令 제97조와 제98조에 다음과 같은 결석의 경우나 義務教育을 妨害하는 保護者 또는 使用者에 대하여 경고 또는 통고하여 출석을 독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7조에서 學校長은 재학중인 아동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거나, 아동의 사용자에 의하여 義務教育을 받는 것을 방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保護者 또는 사용자에게 경고를 발하고,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또는 2회 이상 경고를 발하였을 때에는 그 전말을 아동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8조에 따르면 읍·면·동의 장이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의 保護者에 대하여 아동의 就學 또는 出席을 督促하거나 또는 그 使用者에 대하여 妨害를 하지 아니하도록 警告를 하여야 하며,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하여도 여전히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장은 그 경과를 관할 教育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教育長은 이를 지체없이 教育監에게 보고하여 教育監이 教育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就學兒童의 義務教育을 妨害하는 자를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7. 自意로 인한 學校教育 脫落者를 豫防하기 위하여 中學校 學則 準則 제24조, 高等學校 學則 準則 제25조에 의거하여 퇴학하려는 자도 그 사유를 보증인이 연서하여 學校長에게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中學校 學則 準則 제13조 2항과 高等學校 學則 準則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각 학년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규정하여 결석으로 인한 탈락방지에 強制規程을 挿入하고 있다. 특히 高等學校의 경우 대학입시 전형시 高等學校 內申制 施行指針에 의거하여 출석성적을 내신성적 총점의 10% 배정

하여 病缺이나 喪故缺을 제외한 임의적인 결석을 방지하고 있다.

158. 대한민국은 教育의 國際化를 教育政策의 주요 목표로 삼고, 教育法에 '國際教育 및 國際教育協力'의 장을 신설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國際社會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소양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國際化 教育을 추진하고, 또한 外國政府, 國際機構 및 外國教育機關 등과 國際教育協力の 增進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각국과의 문화협정에 의한 국제협력 활동은 물론 國際聯合教育科學文化機構(UNESCO),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아시아-태평양 經濟協力體(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한 教育交流協力 活動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연구 및 강좌 지원, 학술대회, 교육정책 정보교환, 연구·연수 인력 파견, 각종 사업활동 지원 및 참여 등이다.

第2節 教育의 目標(協約 第29條)

159. 대한민국 教育法 제1조는 '교육은 弘益人間的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自主的 生活 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具有하게 하여 民主國家 發展에 봉사하며 人類共榮의 理想實現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는 個人倫理, 社會倫理, 國家倫理뿐만 아니라 國際倫理까지 포함되어 있다.

160. 다음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교육방침들이다.

- 1) 身體의 健全한 發育과 維持에 필요한 知識과 習性을 기르며 아울러 堅忍不拔의 氣魄을 가지게 한다.
- 2) 愛國愛族의 정신을 길러 國家의 自主獨立을 維持發展하게 하고 나아가 人類 平和建設에 기여하게 한다.
- 3) 民族의 固有文化를 繼承昂揚하며 世界文化의 創造發展에 貢獻하게 한다.
- 4) 眞理探究의 精神과 科學的 思考力을 培養하여 創意的 活動과 合理的 生活을 하게 한다.
- 5) 自由를 사랑하고 責任을 尊重하며 信義와 協同과 愛敬의 精神으로 調和있는 社會生活을 하게 한다.
- 6) 審美的 情緒를 涵養하여 崇高한 藝術을 鑑賞創作하게 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餘裕時間을 有効히 사용하여 和諧明朗한 生活을 하게 한다.
- 7) 勤儉勞作하고 無實力行하며 유능한 生産者요 현명한 消費者가 되어 健全한 經濟生活을 하게 한다.

第3節 餘暇, 娛樂活動 및 文化的 活動(協約 第31條)

161. 兒童福祉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공원,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 전시 시설 등 兒童專用施設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어린이 憲章에도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施設과 環境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놀이는 그들의 삶을 구성하므로 정부는 위험에 노출됨이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安全한 施設과 環境을 提供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62. 文化體育部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저급 대중문화의 범람에 대비하여 靑少年 文化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다양한 문예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1992-1996년 동안 1,394개소의 兒童專用施設, 어린이 청소년회관,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 공연장, 전시장, 야영장, 숙박 휴양시설, 체육관 등의 운영지원 및 兒童專用施設을 확충하고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163.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유교사상이 지배해 온 사회로서, 아동은 부모의 예속적 존재로서 인식되어 가정안에서는 養育의 대상일 뿐 그 이상의 존재가 되지 못해 아동을 위한 文化가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최근에 와서는 아동도 權利의 主體라는 의식이 사회의 저변에 확산되고 있으나, 아동을 위한 투자는 아직 미미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文化部門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아동의 文化活動을 위한 각종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第8章 特別保護措置

第1節 法的紛爭上の兒童(協約 第40條, 第37條, 第39條)

가. 少年刑事行政(協約 第40條)

164. 아동의 犯罪行爲는 刑法과 少年法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非行少年들은 인격형성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刑罰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少年法 등에서는 少年의 非行을 一般犯罪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少年犯罪에 대하여는 일반 刑事訴訟節次에 의한 刑事處罰 이외에 非行少年의 教育과 善導를 목적으로 한 保護處分 등을 인정하고 있다. 罪질이 극히 불량하여 善導 및 教育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犯法少年에 대하여서만 刑事處罰을 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는 犯法少年에 대하여는 善導 및 保護의 측면에서 教育的인 처우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起訴猶豫, 宣告猶豫, 執行猶豫, 少年鑑別所를 통한 保護處分 등이 있다.

165. 憲法 제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刑罰의 遡及適用을 엄격하게 禁止하고 있다. 憲法上的 刑罰不遡及의 原則은 刑法 제1조에 구체적으로 規程되어 있는 바, 同條는 위의 원칙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후 法律의 變更에 의하여 그 행위가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形이 舊法보다 경한 때에는 新法에 의한다. 재판 확정후 法律의 變更에 의하여 그 행위가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形의 執行을 免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66. 憲法은 제27조 4항에서 “刑事被告人은 有罪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추정된다”고 하여 無罪推定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다. 刑事訴訟法 제275조의 2도 “피고인은 유죄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刑事被告人의 無罪推定은 형사절차상의 확고한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刑事訴訟規則 제118조 2항은 公訴狀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선임관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물건을 첨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형사실무상 無罪推定의 原則을 실효성

있게 담보하고 있다.

167. 憲法 제12조 5항은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理由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法律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拘束理由 등 告知制度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刑事訴訟法 제72조는 “被告人에 대하여 犯罪事實의 요지, 拘束의 理由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밝히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同法 제88조는 “被告人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公訴事實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規程은 同法 제209조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된다.

168. 無料辯護를 받을 被告人의 權利에 관하여는 憲法 제12조 4항 단서에서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하여 國選辯護人制度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刑事訴訟法은 피고인이 未成年者인 때, 70세 이상의 자인 때, 聾啞者이거나 心身障礙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또는 피고인이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제33조).

169. 少年法 제17조는 “本人 또는 保護者는 少年部 判事의 許可를 얻어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사건에서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토록 한 規程과 마찬가지로 보조인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

170. 모든 사람은 ‘法 앞의 平等原則’을 규정하고 있는 憲法 제11조에 따라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받는다. 더욱이 同法 제27조 1항, 3항과 同法 제5장(제101-110조)에서는 독립된 법원에 의한 公正한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保障하고 있다. 同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법원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同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71. 憲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 不利한 陳述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規定함으로써 의사에 반하는 강제진술을 禁止할 뿐만 아니라, 고문·폭행 또는 협박 등에 의한 任意性없는 自白의 證據能力을 부정하고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관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과 보강증거가 없는 불리한 자백을 유죄의 근거로 할 수 없다(刑事訴訟法 제309조, 제310조). 刑事訴訟法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同法 제289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미리 陳述拒否權을 告知하도록 規定하고 있다(同法 제200조 제2항).

172. 刑事訴訟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상호간 아무런 차별없이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고 權利를 保護함에 필요한 證據調查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同法 제293조, 제294조). 만일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異議申請까지 할 수 있다(同法 제296조). 또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證人訊問에의 참여 및 訊問權을 인정하고 있다(同法 제163조).

173.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청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으나(刑事訴訟法 제297조), 이 경우에도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訊問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피고인에게 예기치 아니한 불이익한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제164조). 더욱이 刑事訴訟法 제310조의 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傳聞證據의 證據能力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反對 訊問權은 충분히 保障되고 있다.

174. 憲法 제101조 1항 및 2항은 “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大法院과 각급 法院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刑事訴訟法은 제3편에서 피고인의 抗訴, 上告, 抗告 등 上訴에 관하여, 제4편에서는 再審, 非常上告 등에 관한 상세한 規程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가 받은 형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抗訴審에 抗訴할 수 있고, 나아가 憲法과 법령에 違反된 것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上告까지 할 수

있으며, 유죄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그 증거가 무죄 등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는 再審請求도 할 수 있다.

175.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刑事訴訟法 제180조, 法院組織法 제6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聾啞나 盲人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으며,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刑事訴訟法 제181조, 제182조). 通譯人의 일당, 여비, 숙박료 등의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76. 少年法 제24조 2항은 “審理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在席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의 私生活을 존중하되 적절한 審理를 위한 規程도 두고 있다. 조사 또는 심리중에 保護事件 또는 刑事事件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주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으며, 이를 違反한 때에는 신문은 편집인 또는 발행인, 출판물은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은 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만원 이하의 罰金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少年法 제68조 제1항, 제2항). 同法은 少年事件에 있어서 고유한 절차를 다양하게 規定함으로써 규약의 規程을 충분히 保障하고 있다.

177. 刑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刑事未成年者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少年法 제4조 1항 2호는 “刑罰法令에 抵觸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少年은 少年部의 保護事件으로 審理한다”라고 규정하여 保護處分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178. 少年法 제32조 3항은 “保護觀察官의 保護觀察處分 혹은 短期保護觀察處分을 받을 자에게 社會奉仕命令 혹은 受講命令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刑事節次 이외의 善導方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法務部 訓令 제88호에 따라 각급 지방경찰청 검사장에 의하여 임명된 檢察少年善導委員들의 善導保護를 조건으로 少年犯에 대하여 起訴猶豫處分을 할 수 있는 制度를 실시하고 있으며, 少年犯에 대하여 刑事處罰이나 保護節次로의 이행을 보류하는 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179. 少年法 제9조는 “少年에 대한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專門的인 知識을 활용하여 少年과 保護者 또는 參考人의 性行, 經歷, 家庭狀況 기타 環境 등을 究明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少年非行 이외에 少年의 선도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少年法 제12조는 “少年部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학자,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少年鑑別所의 鑑別結果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少年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少年法 제58조 1항은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少年事件의 심리에 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180. 少年院生의 교화를 위해 少年院을 教科教育少年院, 職業訓練少年院, 特別少年院 등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 등에 따라 少年院生을 분류하여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악성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教科教育少年院에서는 教育法에 의한 初·中·高等學校 教育過程을 수업하여 學校進學, 編入學을 장려하고, 職業訓練少年院에서는 職業訓練基本教育法에 의한 公共職業訓練을 실시하여 자동차정비 등 17개 직종에 걸쳐 연간 700명에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特別少年院에서는 조직폭력범 등 특정의 강력사범을 집중수용하여 신체훈련 등 特別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집단생활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학예, 체육, 근로봉사, 동식물 사육 등 활동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주 10시간 特別活動指導를 시행하고 있다.

181. 假退院者에 대하여 집중적인 保護觀察을 실시하고 就業斡旋, 結緣, 進學 등을 주선하여 社會適應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就業退院生에 대하여는 수시로 事後指導를 통하여 職業的 부적응을 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나. 自由剝奪된 兒童(協約 第37條 第2項, 3項, 4項)

182. 憲法 제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3항에서는 逮捕, 拘束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할 것을 規定함으로써, 身體의 自由

를 保障하기 위하여 適法節次의 原則과 令狀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183. 憲法의 規程과 精神에 따라 刑事訴訟法은 구속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는 여러 規程들을 두고 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證據를 湮滅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同法 제70조).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公訴事實의 要旨, 引致拘禁할 장소,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 날인한 拘束令狀을 발부한 뒤(同法 제73조, 제75조) 이를 반드시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제85조).

18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拘束令狀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刑事訴訟法 제201조). 다만,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證據를 湮滅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판사의 拘束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同法 제206조), 또는 現行犯人이나 準現行犯人인 때(同法 제211조-214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事前令狀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법관으로부터 事後 拘束令狀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함으로써(同法 제207조, 제213조의 2) 사후에 충분히 司法的 統制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85. 少年法 제57조는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의 審理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審理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少年犯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一般刑事事件과 다른 절차를 취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186. 20세 미만의 受刑者는 少年矯導所에 수용되며(行刑法 제2조 제3항),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하여 20세 이상의 受刑者와 20세 미만의 受刑者가 矯導所에 함께 수용될 수 있다(同法 제3조 1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成年과 少年은 분리하여 수용됨으로써, 원칙적으로 少年犯과 成年犯은 별도의 矯導所

에 수용되며, 예외적으로 같은 矯導所에 수용되더라도 분리하여 수용됨으로써 少年犯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187. 少年院法 제8조에 의하면 “男子와 女子는 分離收容하고, 16세 미만의 자와 16세 이상의 자는 分離收容한다”라고 규정하여 非行性的 汚染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新入少年에 대해서는 一般保護少年과 분리수용하고, 10일간에 걸쳐 分類調査를 실시하며, 분류조사의 결과에서 밝혀진 제사실과 鑑別結果를 종합하여 保護少年處遇審査委員會에서 分離收容, 處遇期間, 教育過程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 결정한다(同法 施行令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188. 대한민국은 전국에 있는 11개 少年院을 기능별로 4개의 教科教育, 3개의 職業訓練, 1개의 女子, 2개의 特別, 그리고 2개의 綜合少年院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保護少年의 性別, 연령, 입원회수, 공범유무, 비행의 질, 처우기간, 교육과정 등에 따라 시설을 달리하거나 동일 시설내에서 구획하여 분리수용한다(少年院法 제4조, 제8조, 同法 施行令 제3조, 제11조, 제16조).

189. 保護少年 또는 委託少年의 保護 및 矯正教育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면회를 허가하고 있으며, 서신은 그 회수와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書信檢閱을 하여 그 내용이 矯正教育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신수발을 제한하도록 하여 少年의 敎化와 私生活의 調和를 꾀하고 있다(少年院法 제18조, 同法 施行令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保護少年 직계가족의 慶弔事 등 矯正教育上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規定함으로써 가족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社會適應能力을 培養하도록 하고 있다(少年院法 제19조, 同法 施行令 제52조, 제53조).

190. 憲法 제12조 6항은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법원에 청구할 權利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刑事訴訟法 제214조의 2(拘束의 適否 審査)는 모든 犯罪에 대하여 拘束適否審査請求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刑事訴訟法은 피고인이 未成年者인 경우에 법원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法律救助能力이 상대적으로 약한 未成年者를 특별히 保護하는 規程을 두고 있다(同法 제33조 제1호).

191. 최근 5년간에 나타난 少年犯罪는 1989년까지 계속 增加하다가 1990년 이후에는 조금씩 줄고 있다. 1992년에 發生한 少年犯罪는 전체 犯罪의 6.4%

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27.5%만이 기소되었다. 一般犯罪와 비교해 볼 때 少年犯의 起訴猶豫率이 一般犯罪보다 25% 높게 나타나, 少年犯罪에 대해서 一般犯罪와 달리 善導爲主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文化體育部, 1993: 432-459).

<表 15> 總 犯罪對比 青少年犯罪 構成比

(單位: 千, %)

區 分	1988	1989	1990	1991	1992
총 범죄	1,144,702	1,337,587	1,402,417	1,540,914	1,542,035
소년범죄	104,052	108,015	105,567	102,537	99,301
구성비(%)	9.1	8.1	7.5	6.7	6.4
기소율(%)	39.4	39.3	36.9	39.3	27.5

資料: 文化體育部, 『青少年白書』, 1993.

다. 兒童에 대한 死刑 및 終身刑 禁止(協約 第37條 第1項)

192. 少年法 제59조는 “18세 미만인 少年이 죄를 범하여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有期懲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保障하고 있다.

라. 社會復歸支援(協約 第39條)

193. 更生保護活動은 刑事處分 또는 保護處分을 받고 少年矯導所나 少年院 등에서 性行矯正에 대한 수요과정을 마치고 社會에 복귀한 자에게 社會環境的 障壁로 인하여 再非行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社會適應 및 自立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制度를 말한다. 非行靑少年의 更生保護는 法務部 산하에 있는 更生保護會가 담당하고 있는데, 更生保護會는 중앙에 본회가 있고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에 12개 지부와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감호소 등 52개소에 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中小企業家를 중심으로 한 職業保導協議會 등 更生保護事業 後援會가 조직되어 就業斡旋, 醫療施惠, 財政支援 등의 방법으로 更生保護事業을 지원하고 있다. 그 保護의 내용은 숙식제공, 여비지급, 職業訓練, 就業斡旋, 生業造成金 支給, 觀察保護, 기타 자립지원 등으로 이루어

져 있다(體育青少年部, 1992: 397, 文化體育部, 1993: 498-500).

第2節 搾取 狀況下의 兒童

가. 經濟的 搾取(協約 第32條)

194. 대한민국에서는 勤勞基準法 제50조에 의하여 13세 이상인 자만을 고용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자를 年少勤勞者로 保護하고 있다. 13세 미만者가 就業을 희망할 경우에는 義務教育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職種을 指定하여 就職認許證을 발급하고 있다. 就職認許의 禁止職種으로는 18세 미만 年少勤勞者의 使用禁止 職種은 물론,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숙박·요식업소 업무, 엘리베이터의 운전업무 등 도덕상 또는 보건상 有害, 危險하다고 인정되는 직종 등이 있다. 18세 미만자는 갱내작업, 고압전기기구 취급, 5미터 이상의 땅굴에서의 업무, 진동이 심한 업무, 2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 취급업무 등 有害, 危險 職種에 대해 雇傭을 制限하고 있다.

195. 18세 미만 年少勤勞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一般勤勞者는 1일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반면, 18세 미만 年少勤勞者는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延長勤勞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一般勤勞者는 1주일에 12시간 범위내에서 가능한 반면, 18세 미만 年少勤勞者는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特別保護를 하고 있다. 一般勤勞者와는 달리 18세 미만 勤勞者에 대해서는 夜業勤勞(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사이)와 休日勤勞를 禁止하고 있다.

196. 年少勤勞者에 대한 經濟的 搾取를 방지하기 위하여 勤勞契約과 最低賃金を 保護하고 있다. 勤勞基準法 제53조에서 親權者 등은 아동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親權者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未成年者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 勤勞者도 就業期間이 6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는 最低賃金法의 保護를 받도록 규정하여, 年少勤勞者들의 最低賃金を 保護하고 있다.

197. 年少勤勞者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하여 勤勞基準法 12장에서는 각각 罰則規程을 두고 있으며, 兒童特別保護規程의 遵守를 위해 全國의 45개 地方勞

動官署가 5인 이상의 事業場을 대상으로 지도 및 감독하고 있다.

198. 1992년 4월 현재 32,952명의 18세 미만 아동이 근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이 중 13세 미만의 年少勤勞者는 118명(男子 27명, 女子 91명)이며, 14-17세의 年少勤勞者는 32,834명(男子 3,846명, 女子 28,988명)으로, 全體勤勞者의 0.6%가 18세 미만의 年少勤勞者이다. 이들 年少勤勞者의 95.2%가 製造業에 從事하고 있다(勞動部, 1992).

나. 痲藥(協約 第33條)

199. 向精神性 藥品管理法은 마약의 불법사용, 생산, 거래로부터 아동을 保護하기 위하여 14세 미만자에게 向精神性 醫藥品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販賣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所持한 자는 10년 이하의 懲役に 처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아동을 保護하기 위해 전 력하고 있다.

200. 痲藥管理法은 許可없이 대마의 수입, 수출, 제조, 매매 또는 매매알선, 吸煙 또는 攝取하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場所, 施設, 裝備, 資金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禁止하고, 그 違反者에 대하여는 常習犯 등의 경우 최고 死刑, 無期 또는 10년 이상의 懲役に 처하고 있다.

201. 痲藥類 中毒者에 대한 治療保護를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全國에 17개소의 國·公立病院과 5개의 民間病院을 마약류 중독자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無料 治療하고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의 보다 專門的이고 效率的인 治療와 再活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명상 규모의 국립 마약류 중독자 專門治療센터를 건립중에 있다(保健社會部, 1993b: 209). 정부의 노력으로 痲藥事犯은 減少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본드나 가스등의 吸入製와 같은 有害 化學物質 中毒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92년에 행해진 靑少年의 藥物濫用 實態調査에 따르면, 治療的 介入이 필요한 靑少年 藥物 使用者는 4만5천명에서 8만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주왕기 외, 1993: 181). 그러나 이들의 治療를 전담하는 정부의 주무부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약물사용자는 정신과에서 治療가 가능하나, 藥物中毒이 醫療保險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治療機關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주왕기 외, 1993:

186-187).

다. 性的 搾取와 虐待(協約 第34條)

202. 刑法 제242조는 性的搾取와 虐待로부터 아동을 保護하기 위하여 “營利를 목적으로 未成年 또는 淫行의 常習있는 婦女를 매개하여 姦淫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6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兒童福祉法은 아동에게 淫行을 시키거나 淫行을 매개시키는 行爲者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제18조 5호, 제34조 1호).

203. 淪落行爲等防止法은 淪落行爲를 禁止하고, 淪落行爲의 상대자가 되기를 誘引하거나 勸誘하는 行爲 및 淪落行爲를 誘引 또는 強要하거나 그 處所를 제공하는 行爲를 禁止하면서, 이를 違反한 자에 대해서는 最高 3년 이하의 懲役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제4-6조, 제14-16조).

204. 風俗營業의 規制에 관한 法律은 風俗營業所에서 淪落行爲 또는 淫亂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를 斡旋 또는 提供하는 자에 대하여 最高 3년 이하의 懲役이나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5. 刑法 제244조는 頒布 또는 販賣 등의 行爲에 제공할 목적으로 淫亂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4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規定함으로써 아동을 이용한 猥褻物 製作 등을 금하고 있다.

라. 其他 形態의 搾取(協約 第36條)

206. 兒童福祉法은 아동이 健全하게 出生하여 幸福하고 健康하게 育成되도록 그 福祉를 保障하기 위하여 同法 제18조에서 ① 不具畸形의 아동을 公衆에게 觀覽시키는 行爲, ② 아동에게 求乞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求乞하는 行爲, ③ 公衆娛樂, 興行目的으로 14세 미만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行爲, ④ 14세 미만 아동을 주점 기타 接客영업에 종사시키는 行爲 등을 禁止하고 있으며, 이를 違反한 경우에는 同法 제34조의 規定에 의해 最高 10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 이하의 罰金刑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을 保護하고 있다.

▣ 參 考 文 獻 ▣

- 경제기획원. 1994. 「1994년도 예산개요」. pp. 303-335.
- 교육부. 1993. 「교육통계연보」.
- 김국도·김경숙·오영호·하길용. 1991. 「199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만두. 1992.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 김승국. 1992. “교육기회의 확대.” 「장애자복지종합대책의 시행평가」.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장애인 재활연구소. pp. 20-26.
- 김혜련·박인화·황나미·이원신·박주문. 1989. 「전국영유아 예방접종 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노동부. 1992.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 노혜련. 1993. 「아동권리 국제협약 및 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상황과 당면과제」. 한국사회정보연구원.
- 문선화. 1993. “청소년 가장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 1: 109-137.
- 문화체육부. 1993. 「청소년백서」.
- 박보희(편). 1991. 「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선언 및 행동계획 UNICEF 한국후속사업 자문회의 보고서」. 국제연합아동기금 한국대표부.
- 박보희·김선심(편). 1992a. 「1990년대 한국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참고자료집」. 국제연합아동기금 한국대표부.
- _____ 1992b. 「제1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전국대회 보고서」. 제1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전국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연합아동기금 한국대표부.
- 박용일. 1992.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현행법 체계와 아동학대」. 제8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pp. 11-13.
- 박인화·황나미. 1993. 「모자보건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인화·황나미·정기원·오미영. 1994.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사회부. 199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92-1996, 보건의료·사회 보장부문계획」.
- _____. 1993a. 「보건사회통계연보」.
- _____. 1993b. 「보건사회백서」.
- _____. 1994a. 「아동복지사업지침」.
- _____. 1994b. 「아동복지시설열람표」.
- _____. 1994c. 「장애인복지시설 열람표」.
- _____. 1994d. 「장애인복지사업지침」.
- _____. 1994e. 「보육사업지침」.
- 서광윤. 1992.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자복지종합대책의 시행평가」.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장애인 재활연구소. pp. 5-10.
- 송건용·남정자·최정수·김태정. 1993. 「1992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 행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외무부. 199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 유기성. 199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훈. 1991. “모자보건 사업면에서의 장애자 발생예방.” 「장애의 발생 예방 대책」. 한국장애자 재활협회 장애자 재활연구소. pp. 3-18.
- 이광호. 1993. “청소년 유해환경과 풍속영업규제 관계법.” 「청소년 관계법과 행정」. 한국청소년개발원. pp. 146-172.
- 이동환. 1991. “신생아 Screening 대책.” 「장애의 발생 예방 대책」. 한국장애자 재활협회 장애자 재활연구소. pp. 25-32.
- 이정수·신의기·김효정. 1990.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인협·오정수. 1993.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기원·김만지. 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인섭. 1994. “법과 아동보호.” 「변화하는 사회와 어린이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세미나. 국제연합아동기금 한국위원회. pp. 35-45.
- 조재국·이윤현. 1993.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수급에 관한 기초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왕기·김경빈·박명윤. 1993. 「약물사용의 실태와 예방대책」. 한국약물남용

- 연구소.
- 천정용. 1993. “청소년 관계법의 논점과 과제.” 「청소년 관계법과 행정」. pp. 216-241.
- 통계청. 1991. 「장래인구추계: 1990-2021」.
- _____. 1992.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
- _____. 1993. 「1992 경제활동 인구연보」.
- 체육청소년부. 1992. 「청소년백서」.
- 한국법제연구원. 199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 한인섭. 1992. “아동보호와 아동의 권리.” 「현행법 체계와 아동학대」. 제8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pp. 1-10.
- 황의경·배광웅. 1993. 「심신장애인 재활복지론」. 홍익사.
- 허남순. 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1: 23-45.
- 홍창의. 1991. “영유아 정기검진제도.” 「장애의 발생 예방 대책」. 한국장애자 재활협회 장애자 재활연구소. pp. 19-24.

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

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

前 言

이 協約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에게는 공동체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 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그의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차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정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어떠한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화·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적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예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은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권리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안에서 아동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을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

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

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 (2)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 (9)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의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후 즉시 동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서명란은 생략)

이 협약은 1954년 12월 17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중동 평화 회담에서 채택된 이 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협약은 1954년 12월 17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중동 평화 회담에서 채택된 이 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